
第9回서울特別市議會(定期會) 財務經濟委員會會議錄 第6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時 1991年12月26日(木) 午後3時

場所 財務經濟委員會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財政投融资基金設置條例案
 2. 서울特別市清掃事業本部設置條例案
 3. 1991年度行政事務監查結果報告書採擇의件
-

審査된案件

1. 서울特別市財政投融资基金設置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2面
 2. 서울特別市清掃事業本部設置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2面
 3. 1991年度行政事務監查結果報告書採擇의件 ... 67面
-

(15時 開議)

○委員長 朴尙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回 定期會 第6次 財務經濟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委員 여러분 延日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第9回 定期會에
우리 委員會로 回附된 案件이 31건으로 제일 많았습니다.

여러 委員님들이 議事進行에 적극 協助해 주셔서 지난 第4
次, 第5次 委員會에서 28件的 案件을 審査하여 處理를 하여
주셨습니다. 금일 審査할 案件은 지난 第5次 委員會에 上程

하여 진지한 質疑와 答辯을 들었습니다. 深度있는 檢討를 위해 委員님들과 協議한 대로 오늘 再審査기로 한 서울特別市 財政投融資基金設置案과 서울特別市 清掃事業本部設置條例案 2件과 지난 12月 3日부터 12月 7日까지 實施한 行政事務監査에 대한 結果報告書採擇 등 모두 3件이 되겠습니다.

1. 서울特別市 財政投融資基金設置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2. 서울特別市 清掃事業本部設置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5時 03分)

○委員長 朴尙東; 議事日程 第1項 서울特別市 財政投融資基金設置條例案과 議事日程 第2項 서울特別市 清掃事業本部 設置條例案을 일괄 上程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지난 委員會 때 서울特別市 측의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는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質疑· 答辯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이 계시면 가능한 한 質疑하시는 過程에 중복된 內容의 質疑는 피해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고루 고루 委員 여러분들이 質疑하실 수 있도록 時間을 안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委員께서 너무 긴 時間을 할애 받으시면 다른 委員이 質疑하실 時間이 없기 때문에 오늘 가능한 한 時間을 節約하고, 年末인 關係로 委員님 여러분의 個人 事業도 바쁘시고 또 年末에 마무리 할 일들이 많으실 줄로 생각합니다. 다른 常任委員會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우리 財經委員會가 業務量도 많고 또는 우리가 管掌하는 業務 自體가 너무 중요한 業務들이기 때문에, 어제 그저께 우리 常任委員會를 끝내려고 했습니다만 너무 중요한 業務들이기 때문에 오늘 延長해서 常任委員會를

開會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委員님들 양해하시고 가능한 한 여러 委員들이 質疑를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또 答辯하실 企劃管理室長께서도 가능하면 答辯을 간단하게 해 주시도록 해서 會議의 能率을 기하도록 서로 協調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委員님들 質疑를 해 주시도록 하고, 企劃管理室長께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答辯할 때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오늘 上程된 이 條例案에 대해서 여러분 質疑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號 案件 서울市財政投融資基金 그것부터 質疑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朴尙東; 그렇습니다. 일괄 上程되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案件이 많지 않기 때문에 財政投融資基金設置條例案에 대한 質疑도 해 주시고 또 清掃本部設置條例案에 대한 것도 質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朴尙東; 네, 말씀해 주시지요.

○柳準向 委員; 어제 그저께 清掃事業本部 設置에 대해서 機構가 너무 膨脹된 機構인데 機構縮小 方向과 制度改善 問題를 研究하셔서 代案을 좀 提示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準備가 되셨는지 우선 質問을 하고 싶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企劃管理室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機構가 너무 크지 않느냐 하시는 委員님들 말씀가지고 제가 처음보다 상당히 많이 줄여서 했는데 委員님들 말씀을 잘 들어서 일부 조금 저희가 檢討를 해 봤습니다. 지금 처음 段階니까 清掃研究所에 專門職으로 構成되어 있는 清掃研究部하고 施設研究部가 있는데 이것을

일단 같이 합쳐서 出發시키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淸掃局내에 지금 3個 部가 있습니다만 3個 部를 總務部하고 業務部가 性格上으로 봐서 같이해서 人員만 조금 서로 補完을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施設管理局에 현재 3個 部가 있습니다만 施設 1·2 部를 初期段階에서는 우선 하나로 해서 出發을 했으면 해서 일단 委員님들 걱정하시는 部分을 처음에 저희가 多數委員님들의 高見을 존중을 해서 출발하고 필요하면 저희가 또 委員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볼 생각입니다.

○柳準向 委員; 그럼 上部編制 問題는 그렇다고 하고, 下部 지금 현재 淸掃運營 制度에 대해서는 改善策이 좀 마련되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지금 制度 改善策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늦어도 내년도 臨時會議에는 저희가 報告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柳準向 委員; 물론 여러 委員님들 다 지금 共感되는 일인데 아파트촌 地域은 나름대로 淸掃運營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個人住宅地帶, 특히 높은 地帶 淸掃狀態가 굉장히 지금 좋지가 않고, 또 지금 美化員들의 나쁘게 말하면 횡포라 할까, 用役會社에서 여러 가지 횡포가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問題를 좀 改善해서 가능하면 이번에 淸掃事業本部가 新設되느니만큼 一元化해서 體系 있는 制度로 改善해 주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알겠습니다.

○柳準向 委員; 지금 室長님 말씀을 들었는데 제 意見은 淸掃

事業部 編制에 지금 清掃研究所傘下 2個 研究部가 있지 않습니까? 專門職으로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柳準向 委員; 이것을 研究所 밑에 專門職 要員들이 研究委員이라는 한 機構만 設置를 하고, 지금 2個 部를 갖다가.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柳準向 委員; 그 다음에 清掃局에 지금 總務課와 業務課 이것을 같이 하나로 묶는 것하고, 施設管理局에서는 施設1부와 2部를 같이 묶는 것 이렇게 縮小를 우선해서 施行을 하다가 나중에 業務量이 더 늘고 불가할 때는 또 改正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제 意見은 本部の 機構는 清掃研究所 그 밑의 專門要員을 하나로 묶고, 이 2個 部를 줄이는 方向으로 이렇게 해서 下部制度 改善만 一元化 시켜 줄 것 같으면 本委員의 뜻은 그런 範圍 內에서 이 清掃本部 設置를 承認 動議하는 바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앞으로 일을 해 가면서 필요한 事案이 있으면 계속 좀 補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整理를 해 보겠습니다. 柳準向 委員께서 清掃局 傘下에 總務部와 業務部, 作業管理部 3개부가 있는데 總務部와 業務部가 業務 分擔으로 볼 때 비슷한 業務量들이 같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두 個로 해서 하나를 없애자는 말씀이지요?

○柳準向 委員; 네.

○委員長 朴尙東; 그 다음에 또 施設企劃部하고 施設1부, 2部를 統合해서 하나로…….

○柳準向 委員; 施設部 하나로 그냥…….

○委員長 朴尙東; 하나로 하자는 案하고 그 다음에 淸掃研究所 傘下에 淸掃研究部, 施設研究部를 研究部 하나로 하는 것이 좋겠다.

○柳準向 委員; 이것은 專門要員이니까 하나로 묶자 그것입니다.

○委員長 朴尙東; 네, 그렇게 줄여서 일단 淸掃本部設置條例案은 通過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動議案을 주셨습니까?

○柳準向 委員; 네.

○委員長 朴尙東; 네, 柳準向 委員이 動議案을 주셨는데 일단은 質疑를 조금 더 하고 定式動議案을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네, 말씀하시지요.

○崔明鎭 委員; 市政研究院 어제 그제 本 委員會에서 條件部로 通過가 되었는데 市政研究院하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淸掃研究所하고 差異點이 뭐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市政研究院에는 부분적으로 環境에 관한 部分도 들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 지금 여기서 設置해서 하려고 하는 淸掃研究所는 實質적으로 現場의 問題를 解決하고자 하면서 그것을 보다 科學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그러한 分野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얼른 생각을 하면 그거나 그거나 같은 現狀이 아니겠느냐 하시겠습니까만 예를 들면 分離收去라든가 資源再活用이라든가 燒却處理技術이라든가 이런 現場과 連結된, 現場 위주의 그러한 專門性을 보다 提高하는 次元에서 이것은 研究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지금 市政開發研究院에서 하려고 하는 보다 광범위한 그러한 專門知識 그런 分野와 다소 차이가 있다,

이것을 얼른 말로다 表現하기가 참 거북하네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崔明鎭 委員; 그것은 答辯하신 內容이 市政研究院은 現場感覺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現場感覺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

○崔明鎭 委員; 現場感覺이 지금 清掃研究所보다는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아니지요. 現場感覺이 問題가 아니라 그 일의 狀態가, 일의 現狀이, 예를 들면 都市計劃分野라든가 交通分野라든가 이런 分野는 學問的으로도 定立이 되어 있습니다. 學問的으로도 定立이 되어 있고 그 學問을 우리 現狀에 맞도록 調整할 수 있도록 그러한 與件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清掃業務에 관한 한 지금 學問的인 基礎도 되어 있는 것이 없고, 또 우리나라.....

○崔明鎭 委員; 아니, 清掃業務가 지금 學問的으로 基礎研究가 안 되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우리나라의 交通問題는 全世界가 비슷하고, 環境問題도 비슷합니다만 이 清掃問題는 우리나라 쓰레기조차도, 아주 가장 가까운 日本하고도 우리가 쓰레기가 다릅니다. 쓰레기 種類가 다르고 또 그 다음에 쓰레기의 發生源이라든지 쓰레기의 處理方式이라든지 이런 것이 外國 쓰레기에 준해서, 外國에서 해 놓은 制度에 준해서 그대로 適用할 수가 없는 그런 實情에 있습니다.

○崔明鎭 委員; 그러면 清掃研究所에서 清掃研究所로 이렇게 分類해서 研究業務를 맡는 것하고, 市政開發院이라는 研究를 專門的으로 하는 研究員에서 이 研究를 擔當하는 것하고 그

것보다는 清掃研究所에서 擔當하는 것이 더 좋다는 말씀이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렇습니다.

○崔明鎭 委員; 그러면 市政研究院도 마찬가지로입니다. 交通分野는 交通分野研究院이 생기고, 環境分野는 環境分野研究院이 생기는 것이 마땅하지 무슨 市政研究院은 統合해서 그렇게 하고 또 이것은 別途로 分類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것은 性格이 좀 다르지요.

○崔明鎭 委員; 다르지가 않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것은 다릅니다.

○崔明鎭 委員; 왜 다릅니까? 交通分野도 專門的으로 現場感覺을 살려서 研究하는 것이 훨씬 더 效率的입니다. 지금 말씀을 추리하면.....

○委員長 朴尙東; 아까 제가 說明을 드렸는데 都市問題라든가 交通問題라든가 環境問題 이것은 世界的으로 共通된 어떤 원리 또는 科學的인 지금까지의 研究結果 이런 것의 여러 가지 모델들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崔明鎭 委員; 研究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分離해서 研究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統合的으로 研究所를 設立해서 研究所에서 全般的으로 研究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市政研究院이라고 32億원의 막대한 豫算들여서 研究院을 내년 設立하면서 또 이렇게 清掃事業本部라고 해서 清掃研究所를 만든다는 것은 行政機構의 縮小化, 能率化 또는 極大化 이것이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現在에도 蘭芝島쓰레기 綜合處理事業所나 衛生處理場 제가 指摘했지만 研究 業務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分掌業務中에서. 굳이 여기서 清掃研究所라는 것을 設立하고 별도로 떨어져 나가게 할 아

무런 妥當性이나 根據가 없어요. 市政研究院 생겼지요? 環境에 대해선 環境研究所가 있습니다, 지금. 있지 않습니까? 서울市 傘下……. 또 蘭芝島쓰레기 綜合處理事業所에도 研究分野를 擔當하는 公務員이 있어요. 그것만을 研究하는 사람이 있고, 衛生處理場에도 있습니다. 무슨 業務와 重複된 業務를 이렇게 機構만 擴張하고 해서 만들어야 될 根據가 없는데 이렇게 機構만 擴張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지금 機構의 業務性質別 分類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執行部 立場에서 機構를 늘려서 무슨 機構 展示場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지금 保健 環境研究院이라든지 環境問題研究所라든지 이런 점이 점점 細分化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淸掃問題만은 아직까지 한 군데서도 이것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研究를 하겠다. 淸掃를, 쓰레기를 研究한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얼른 들으면 그게 무슨 소리냐 할 정도로 우리 市民들이 무더져 있는 그런 狀況입니다. 그래서 이제 市가 이런 것을 좀더 깊이 있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諸般與件을 전부 총망라해서 깊이 있게 한 번 現場과 맞물려서 같이 들어간다 하는 그런 次元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崔明鎭 委員; 現場과 맞물려서 깊이 있게 研究한 것은 蘭芝島쓰레기綜合處理事業所 이것만큼 現場과 깊이 있게 맞물려서 研究하는 데가 없습니다. 衛生處理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分掌業務에도 절반 이상을 여기에다 研究業務를 附與를 했어요. 그리고 내년부터 市政研究院도 새로 생기는데, 이 淸掃研究所를, 여기 蘭芝島에도 研究所있고 衛生處理場에도 研究業務있고 또 市政研究院도 있고 市政 全般에 관해서, 全體에 관해서 研究하는 研究院이 있는데 여기다 淸掃研究所를

뭐하려고 만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지금 蘭芝島라든지 어제 그저께도 崔委員님 指摘을 하셨습니다만 用語上의 表現하고 實質적으로 돌아가는 그 內容하고 多少 差異가 좀.....

○崔明鎭 委員; 機構만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研究가 됩니까? 實質적으로 안 된다면 機構만 만들어 놓으면 研究가 됩니까, 그러면.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實質적으로 안 되는 것이 아니지요. 實質적으로 그런 構成을 아직까지 못했지요. 蘭芝島는 蘭芝島 綜合處理事業所입니다. 名稱 自體도 綜合處理事業所이지, 거기에서 그 蘭芝島의 쓰레기 性分을 分析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하고 할 수 있는 現實的인 그러한 機構 組織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崔明鎭 委員; 그러면 서울市條例에서 分掌業務로 되어 있는 것, 쓰레기 衛生處理方法研究 이것은 分掌業務로 그냥 미사여구로 꾸며 놓은 말입니까? 쓰레기의 衛生的 處理로 생성되는 副產物處理와 利用方法에 관한 研究, 이 職務 第2條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職務 第2條에 이렇게 蘭芝島쓰레기處理場이 이런 職務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職務를 앎고 지금까지 엉뚱한 일만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렇게 하도록 努力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崔明鎭 委員; 그러면 이 清掃研究所 設立해도 마찬가지입니다. 清掃研究所에서 清掃에 관한 研究를 한다고 職務 條項에 나와 있더라도 그대로 안 하면 있으나마나 有名無實한 機構 아납니까? 既存에 있던 機構도 有名無實한데 새로 設立해 봐야 더 有名無實한 것 아납니까? 機構 擴大해서 豫算 들여서

해봐야.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앞으로 좀 지켜봐 주십시오. 제대로 하도록 좀 할테니까.....

○崔明鎭 委員;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既存에 있던 組織에서도 제대로 자기 業務를 못했는데 새로 組織 만들어서 뭐합니까? 그리고 淸掃局은 제가 淸掃事業本部の 業務를 이야기했지만 大統領令으로 規定된 淸掃1課, 2課의 業務와 동일합니다. 淸掃1課, 2課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既存의 淸掃1課, 2課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대로 存置가 됩니까, 아니면 廢止가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存置가 안 되지요.

○崔明鎭 委員; 廢止가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崔明鎭 委員; 그러면 大統領令으로 新設해 놓은 機構는 廢止를 시키고, 서울市條例로써 만드는 것은 新設을 해도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崔明鎭 委員; 그런데 언제부터 廢止가 됩니까, 淸掃1課, 2課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이것 發足하면 廢止가 됩니다.

○崔明鎭 委員; 發足하면 즉시 廢止가 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崔明鎭 委員; 아직 大統領令으로 改正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이것이 條例 承認이 나와 그것이 廢止가 됩니다.

○崔明鎭 委員; 지금 業務分掌 內容이나 이것을 보면 하등의

이렇게 機構를 擴張해서 만들어야 될 根據가 없어요, 妥當性
이 없고. 그리고 本委員이 指摘했지만 法에도 분명히 나와 있
습니다. 地方自治法 第102條, 行政機構의 設置· 運營에 있어
서 그 合理化를 圖謀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다른 地方自治
團體와 均衡 維持해야 되고, 地方自治法 第103條에도 나와
있어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에서 그 규모의 적정화와 운
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된다」 大統領令으로 設置된 清掃
1課, 2課 既存 組織에서 分掌하고 있는 業務를 새로 擴張해
동일한 業務를 맡겨야 될 根據가 없는데, 法的으로도 분명히
合理的으로 하라고 나와 있어요, 定員 管理나 組織은 清掃事
業本部가 새로 追加되는 業務가 있어서 이것을 機構를 擴張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根據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業務條例에 나와 있는 業務分掌 內容에 보면. 그리고 下部機
關으로 蘭芝島쓰레기處理事業所나 衛生處理場 이것도 새로
業務가 追加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既存 業務예요. 清掃研究
所도 마찬가지로, 清掃研究所에는 既存에 있던 것 내년부터
市政研究院도 생기고, 研究에 관해서 專門적으로 研究하는
것. 이렇게 機構가 방대하게 擴張되고 新設되려면 그만큼 根
據와 妥當성이 있어야 되고 合理的이어야 되는데 아무런, 그
것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根據나 妥當성이나 合理的인 것
이 없어요. 機構만 이렇게 방대하게 擴張해서 뭐합니까? 本部
가 생겨야 서울시 行政業務가 잘 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
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財經委 委員님들께서 여러 번 指摘하셨습니다
다만 清掃業務는 各 區廳에도 清掃課가 있고 또 清掃는 쓰레
기收去라든지 모든 것을 代行하는 代行業所가 있어요. 쓰레기
問題가 서울시에서 가장 난제 중의 하나지만 그것을 代行하

는 業所가 있고, 各 區廳마다 清掃課가 있습니다. 行政機構나 組織은, 특히 千萬 서울市民의 모든 業務를 擔當하고 있는 執行部에서는 機構 하나 新設하고 擴張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 줘야지, 아무런 根據없이 機構만, 이렇게 本部 하나씩 만들어 놓는다면 나중에 가면 무슨 本部, 무슨 本部해서 本部만 해도 수백 개, 수천 개 나올 수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그것 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市政開發研究院이 내년에 新設이 안 되면 여기 清掃研究所를 本委員은 어느 程度 勘案해서 인정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崔委員님의 質疑에 대한 것을 企劃管理室長님 조금 잘 研究하셔서 조금 있다 答辯해 주시고 다른 委員님들 質疑 좀 해 주시지요.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李秉守 委員 해 주시죠. 되도록 質疑한 委員의 內容과 重複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秉守 委員; 지금 崔委員이 清掃事業本部制度를 運營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地方自治法 소위 合理化 圖謀 精神에 違背되지 않느냐 하는 視角에서 지금 質問을 하셨는데, 本委員의 見解는 正反對입니다. 合理化를 追求하기 위해서 本 制度가 필요한 것으로 判斷을 하고 執行機構에서 이 案을 내 놓은 것으로 보는데 問題는 市政開發研究院의 機能은 政策開發 같은 것을 研究하는 곳이고 清掃研究所의 研究는 技術上的 問題를 研究하는 소위 形而上學과 形而下學의 問題인데 이것을 얼핏 皮상적으로 보면 그게 그거고 필요 없는 것을 二重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具體的으로 細分化해서 들어가 보면 이 別途 運營 特別會計로 해서 運營하겠다고 하는 이 趣旨는 時期的으로 오히려 늦었다고 봅니다. 쓰레기 1,000톤이

排出되던 時代와 3,000톤, 5,000톤이 쏟아져 나오고 그 處理도 지금까지는 묻던 方法에서 이제 燒却을 하고 壓縮해서 運搬을 하고, 또 燒却하는 그 熱을 利用해서, 이 廢熱을 利用해서 地域煖房을 研究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技法上的 問題가 앞으로 얼마든지 하나의 숙제로 남아 있는데 이런 專門的인 問題를 專門性을 살려서 獨立採算制로 해서 運營하고 그 래야 또 一般會計에서는 이것이 쓰레기用役 問題가 항상 赤字인데 特別會計로 運營해야 그것이 赤字가 얼마 난다 하는 것이 딱 드러나게 나타나니까 市民에게도 現實에 맞게 쓰레기收去料를 대폭 引上해야 되겠다 하는 名分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우리가 너무 否定的인 視角에서 批判만 할 것이 아니라 肯定的인 視角에서 과연 이것이 타당한 것이냐, 그리고 실제 運營上的 機構가 좀 잘못된 것이 있느냐 하는 등등은 좀 修正을 해서 되는 쪽으로 이것을 우리가 檢討를 해 줘야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委員長 朴尙東; 네, 感謝합니다. 金炯奎 委員님!

○金炯奎 委員; 제가 특별히 指摘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아까 우리 崔明鎭 委員이 市政開發研究院이 設立되는 立場에서 淸掃研究院이 따로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質問에 우리 室長께서 答辯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本委員은 우리 崔明鎭 委員의 二重的인 立場의 研究所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에 저는 同意합니다. 따라서 市政開發研究院에 아까 말한 바와 같이 現場에 적합한 그런 研究所가 따로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立場이라고 하면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市政開發研究院에다 淸掃問題도 研究를 하고 또

交通問題를 研究을 하고, 環境問題도 研究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綜合的인 市政開發研究員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本委員은 贊成한 바입니다. 따라서 事業本部の 清掃研究所는 二重的인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방 李秉守 委員이 市政開發研究院과 一線 事業本部の 研究所와의 行動的인 立場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그런 行動的인 立場에서 清掃事業本部가 된다고 한다면 清掃事業本部長의 職級이 行政의 種類입니까? 그 職種이 그것은 一般行政職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專門職인, 다시 말하자면 技術職이 되어야 됩니다.

李秉守 委員의 清掃事業本部가 정말 行動的이고 실지 清掃치는 業務가 重點的이라고 하는 그런 思考라면 이것은 行政職 1級이 필요 없고 技術職에 의한 實質的으로 清掃를 할 수 있는 그런 技術的인 立場의 職級이 필요하고 그 內容에 의해서 우리 사실 機構만 만들어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清掃事業本部가 되어서 일선 市民의 自發的인 精神을 誘導하고 清掃하는데 우리 事業本部 公務員이 앞장을 서서 또 指導를 하는, 몸소 뛰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職級이 높아서 몸소 펼 수 있는 行政體制가, 서비스 公務員像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書記官만 돼도 일선 區廳의 局長은 그렇게 一線에서 뛰지 않습니다. 事務官들이 現場에다 나가서 일을 보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清掃事業本部도 실지 잠바입고 現場에도 돌아다니면서 督勵도 하고, 指導監督하고 이런 사람을 우리 서울市民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基本的으로 綜合해서 볼 때 清掃事業本部の 研究所는 市政研究의 일환으로써 研究所로 活用하도록 적극 本人의 생각을 전달하고, 나머지 職級도 下向 調整해야 됩니다. 下向

調整해서 各 區別로 몇 個區를 擔當을 하든지, 이런 機動的인 立場의 機構가 編制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런 機動的인 立場의 編制를 管理 監督하는 事業本部長 밑에 우리 行政職 2級 公務員 한 분으로 해서 밑에 실시 清掃業務를, 區廳에 있는 清掃課를 실시 指導, 監督하고 하는 이런 立場에서 編制가 縮小編制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네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室長께서 崔明鎭 委員이 大統領令 職制改編이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室長께서 答辯이 이것이 條例가 先行이 되어야 大統領令이 改編된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本委員의 생각은 전적으로 다릅니다. 條例라고 하는 것이 上位法規의 범위 내에서 制定, 改正되어야 될 그런 立場인데 저희들이 大統領令을 職制가 改正되지 않은 立場에서 條例로써의 清掃事業本部를 制定한다고 하는 그런 것은 그것은 法の 論理上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소한도 條例 制定의 기술상 大統領令이라고 하는 令의 旅行令이 行政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條例가 制定이 되면 어느 期間內에 施行令을 改正을 하겠다고 하는 政府의 意志나 서울市의 意志가 분명히 있으므로 해서 議會가 大統領令을 違反하지 않는 範圍內에서 條例를 制定한다고 하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는 議會가 되어야 되지 大統領令이 職制 改編이 되지도 않은 마당에서 우리가 하면 이것이 改正이 됩니다. 이런 漠然한 立場의, 議會를 무시하는 그런 말씀은 절대 容認할 수가 없는 그런 立場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에 대한 所見을 綜合적으로 우리 室長께서 答辯을 해 주시면 施行令이 改正이 되지 않은 그런 立場에서라도 政府를 代表해서 우리 室長이 改正의 努力을 할 것이고,

또한 어떠한 확고한 議會의 權限이 잘못을 저지를 수 없는 그런 立場이 되어야 이 淸掃事業本部에 대한 條例를 制定할 수 있는 것이지 그 基本的인 姿勢가, 基本的인 論理基盤이 造成되지 않은 立場에서 지금 事業本部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條例 制定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問題를 어제 그제도 論議를 했었습니다만 崔明鎭 委員이 좋은 指摘을 했어요. 그런 立場에서 우리 室長의 확실한 답변을 필요로 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지금 崔明鎭 委員님하고 金炯奎 委員 두 분 質疑해 주신 내용 가운데 일의 分量이 增加된 것도 없고, 새로운 課題도 없고 그런데 淸掃研究所를 市政研究院에 붙이는 것이 어떠냐 하시는 그런 質疑가 첫 번에 있었습니다. 사실상 淸掃研究所는 實質的으로 市政研究院의 쪽을 저희가 볼 때는 만일 市政研究院이 무슨 물도 實驗을 하고, 쓰레기 性分도 실험하고, 그런 어떤 工學分野의 쓰레기 기자재를 갖다 놓고 하는 그런 研究所는 아니기 때문에 現實的인 運營面에 있어서 市政研究院이 이 淸掃問題를 研究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淸掃研究所 글자 그대로 化學이라든가, 材料라든가, 土木, 環境, 工學 등 工學分野의 人力과 計測實驗등 工學分野의 資材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實驗所, 研究所로서의 機能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 번 質疑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사실상으로 市政開發研究院은 저희가 그러한 어떤 現場에 機械를 설치해 놓고 모든 것을 거기서 研究 結果値를 뽑아내는 그러한 立場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 다소 차이가 있지 않느냐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제가 答辯을 이렇게 드립니다만 內容的으로

볼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器材施設을 해 놓고 물건을 갖다 實驗을 하고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研究를 각 分野에 걸쳐서 研究를 하는 것 하고는 같은 研究라고 명칭은 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分野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統sum이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本部長이 專門職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答辯을 짧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은 안 해야 되지만 大學의 총장이 教授여야 되느냐, 아니면 事業을 하는 소위 사업가가, 기업가가 大學總長을 해야 되느냐 하는 問題는 先進外國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指揮를 하는 사람이 어느 特殊分野의 責任者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의 公組織이기 때문에 우선 이 公組織에, 소위 쓰레기의 全般的인 行政을 다루어야 되는 그런 데 前提를 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委員님 指摘하신 대로 그러한 必要性이 생길 경우도 있으리라는 豫測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출발만은 그래도 公務員이 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職級도 下向調整을 해서 몇 개 區를 統sum해서 指導, 監督하도록 하는 編制를 좀 縮小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사실 職級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區廳長도 일단 自治區지만 業務에 관한 한 指揮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對外的으로 여러 가지 방대한 人員과 施設과 이러한 것을 전부다 總括해야 되는 立場에서 소위 區廳長과 같은 級數를 가진 本部長을 놔둔다고 해서는 지휘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理解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몇 개 區를 통할 指導하는 그러한 機構의 問題에 관해서는 저희가 人力을 自體內에서 적절히 按配를 해서 그런 형태로 끌고 가면서 實質的으로 指導, 監督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職制가 改正되기 前에 條例 制定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시다만 제가 아까 答辯을 짧게 하라고 자꾸 그러셔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만 政府의 意志가 없는 것이 아니라 늦어도 이번 주 안에 전부 改正이 되어서 내려오도록 지금 정부하고는 節次를 다같이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이고 하니 條例가 制定이 되어서 나오면 아까 말씀대로 行政의 공백을 메꾸는데,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條例와 그 施行令이 같이 맞아 떨어질 수 있도록 委員님들의 協助를 당부 드리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가 무슨 다른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理解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炯奎 委員; 그러면 그 職制改編은 언제까지, 大統領 施行令이.....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늦어도 年內에 다 되도록.....

○金炯奎 委員; 年內에?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金炯奎 委員; 만일에 그것이 年內에 되지 않았을 때는 議會의 位相을 무시하는, 함부로 이렇게 무슨 사정, 핑계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 등 이런 立場이 되었을 때는 室長께서는 議會에 대한 큰 責任을 느껴야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지금 저희도 그런 問題에 관해서 핑

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사실 議會에서 承認을 해 주시는 條例 承認날짜하고 그 다음에 大統領令을 改正하는 이것하고 저희가 議會는 議會대로 말씀을 드리고 中央에 대해서는 中央대로 그 必要性을 逆說하고 뭐 어차피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딱 날짜를, 金委員님 指摘하신 대로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實情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中央에다 이야기를 했는데 한 結果 中央에서의 立場은 條例를 먼저 만들어도 좋다, 다만 淸掃1課는 大統領令이 改正됨과 동시에 廢止하는 것으로 條例附則에다 달아주면 완전하게 條例의 位相問題 이런 것에 대해서, 市議會 位相問題에 대해서 아무런 瑕疵가 없다 저희도 그런 걱정을 해서 그렇게 協議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金炯奎 委員; 그 問題에 대해서 조금 더 言及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大統領令에 의한 淸掃1課와 2課 問題는 우리 條例의 附則에 淸掃 1課와 2課는 본 條例의 效力인 大統領令이 廢止된 날로 부터 效力이 있다 이렇게 달면 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金炯奎 委員; 그러면 위에 이야기하는 上位職級에 대한 問題, 지금 市廳의 機構인 淸掃 1課, 2課가 問題가 아니고 나머지 條例上에 의한 이 機構 여기에 대한 問題는 그때까지 施行을 保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條例의 制定權에 관한 問題가 確實時 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그렇습니다.

○金炯奎 委員; 그러면 지금 淸掃本部 本部長 뭐 지금 編制되어 있는 대로 여기서 나중에 機構 縮小가 어떻게 되겠습니까만 이 編制에 있는 모든 任命 節次는 淸소1·2課가 大統領施行令이 改正이 되는 그 時點에서 施行을 해야 될 것 아니겠

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지금 中央의 立場은 저희가 두 가지의 立場이 있는데 大統領令을 改正하는 것은 극비로 職制에 大統領令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業務가 淸掃事業本部로 移管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削除하는 그런 令 改正에 불과한 것이고, 거기다 어떤 특별한 事項을 賦課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職制에 관한 것은 地方公務員을 管掌하고 있는 內務部長官의 承認으로써 족한 것이고 다만, 그 業務 重複되는 부문, 大統領令으로써 規定된 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 다른 事項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실상 지금 다루고 있는 그런 立場인데, 그러나 業務가 중복되는 것을 놔두고 施行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大統領令이 改正과 동시에 淸掃1·2課는 自動적으로 없어지지만 그 전에도 施行은 可能하다 이런 解釋은 있습니다.

○金炯奎 委員; 그 施行이 可能하다고 하는 解釋은 어디에 根據를 하고 있습니까, 法律的으로 어디에 根據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에 제가 理解를 못하는 점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事業本部 이 職制를 條例의 職制에 의해서도 施行이 可能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고, 또 大統領令施行令에 의한 서울市 職制가 전혀 무시되고 오히려 地方政府인만큼 地方 組織權에 의한 서울市의 職制를 條例로써 制定, 改廢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意味로 제가 들리는데.....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저희가 內務部하고 지금 協議를 하고 있는데 內務部에서 意見이 長官의 承認과 條例가 일단 承認이 되면 다만 條例 附則에다 그렇게 明記만 해 주면 活用이 可能하다 하는 그런 意見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金

委員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전하게 하려면 이번에 年末까지 지금 內務部나 總務處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큰 問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個 課를 大統領승으로부터 削除를 해 내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 두 개는 節次가 지금 進行 중에 있기 때문에 다만 年末까지는 그것을 다 完成해서 해 주겠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받았지만 만일에 그런 問題가 解決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아까 金委員님 指摘하신 대로.....

○金炯奎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런 立場이라고 한다면 지금 서울시 다른 職制問題도 우리 條例로써 다 職制改編을 할 수가 있는 立場 아닙니까? 內務部長官 許諾만 떨어지면, 內部的으로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것은 안 되지요.

○金炯奎 委員; 그것은 왜 안 그렇습니까? 지금 室長이 말씀한 그것을 그대로 대입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서울시 직제 自體를 우리 條例로써 改廢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자면 원래 地方自治의 條例 制定權, 자기 組織權限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學問的으로는 理解가 되는데, 現行 法上 좀 애매모호한 점이 있어서 지금 하지를 않고, 發議를 하지도 않고 하고 있는 立場인데 차제에 지금 大統領승을 고치지 않은 서울시에서 이와 같은 言質과 이와 같은 提案을 했기 때문에 基本的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問題가 直接的으로는 清掃事業本部에 관한 問題지만 또 좀더 擴大해서 눈을 크게 떠서 본다면 서울시 직제 全般的인 問題를 論議할 수가 있는 그런 契機가 되어 있다 하는 점을 유념해서 室長께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사실상 앞으로 地方自治時代에 걸맞

는 組織을 하는 것은 市의 組織 全般에 관한 것도 市議會가 앞으로 條例로써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분적인 制限部分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 다 웬만한 것은 市議會에 의해서 編成, 編制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그런 立場인데,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地方自治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關聯條項에 따라서 보면 이 事業所에 대한 設置는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그냥 그대로 할 수가 있기는 있는데 좀더 이것을 擴大해서 앞으로 다른 組織까지도 大統領令을 그림 고치지 않고 할 수 있냐하는 그 問題는 저는 지금으로써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金炯奎 委員; 실컷 잘 나가다가 또 원점으로 되돌아서는 그런 立場의 答辯을 지금 하는데 그 점이 소위 말하자면 室長의 確固한 意志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래서 이 問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金炯奎 委員; 그렇게 말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면 되는가요. 그리고 이것이 事業所는 地方條例에 의해서 하겠다, 왜 이것이 事業所입니까? 公務員이 다 들어 가 있는데 公務員 職制지요. 서울市 職制의 일환이지, 그 뭐 이름만 事業所라고 붙인다고 해서 事業所의 條例로써 만든다고 하는 그런 發想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地方自治法施行附則에 의하면 당시의 모든 職制는 大統領令과 간주되는 것으로서 附則에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水道事業所本部 그것도 大統領令의 직제에 간주되어 있습니다. 地方自治法 附則에 보시요. 大統領令의 職制로써 간주하게 되어 있어요, 地方自治法 施行令 당시. 그러면 이 清掃事業本部라고 하는 이 職制도 大統領令에 속하는 職制를 지

금 清掃1課, 2課하는 問題가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大統領令 施行令에 反映되어야 될 그런 職制입니다. 그래서 아까 室長 께서 처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地方自治團體의 立場에서 地方議會의 組織圈에 의한 學問的인 立場에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現行 法이 미비한 탓으로 지금 承認도 받고 뺏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서울市 執行廳에서는 大統領令이 改廢되기 이전에 議會에게 이런 機構 新設에 대한 條例制定을 내고 있는데 이렇게 불가피 하느냐, 과연 議會가 法을 따라서, 條例를 따라서 가장 尊重해서 나가야 될 이 議會가 大統領令을 改廢하기 전에 무시해서 과연 條例를 制定하는 것이 議會로써 하는 일이 잘된 일이냐 이것입니다. 난 잘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확실히 政府에서 무슨 文書가 왔으면 그 文書라도, 그것을 基本으로 해서 議會가 條例制定의 우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확고한 이야기를 해 달라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 年末까지는 확고하다 해 놓고 또 정확한 時日은 구체적으로 딱 날짜가 맞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고 이렇다면 이렇게 갈팡질팡해서 도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結果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本委員은 아까 柳委員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이러한 狀態에 있어서는 本 條例案을 당분간 大統領令이 改廢되기 이전에는 審議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정식으로 動議하는 바입니다.

○委員長 朴尙東; 네.

○崔明鎭 委員; 그리고 아까 答辯 중에 業務分掌에서 꼭 本部를 設置해야 될 根據를 提示를 못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大統領令뿐만이 아니고 서울市 條例에도 清掃1課, 2課가 명

백히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條例組織篇 第28條, 第29條에 清掃1課, 2課 그렇게 나와있어요. 서울시條例도 改廢가 되지 않은 狀況에서 大統領令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條例에도 廢止 안 하고 그대로 놔둔 채 同一業務를 清掃事業本部에서 떠맡는다 이것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렇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지금 崔委員님이 말씀하신 것은 事務分掌規則 아닌가요?

○崔明鎭 委員; 事務分掌規則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事務公掌規則은 條例가.....

○崔明鎭 委員; 組織篇에 나와 있어요, 組織篇.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글쎄, 事務分掌規則인데 그것은 條例를 承認해 주시면 事務分掌規則은 議會 承認없이 저희가 그냥 고칠 수 있는 規則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자동으로 改廢가 됩니다.

○崔明鎭 委員; 自動으로 改廢.....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條例만 承認해 주시면 됩니다.

○崔明鎭 委員; 그리고 아까 研究業務 中에서 蘭芝島쓰레기處理事業所나 현재 衛生處理場에서 하는 研究業務와 새로 設置되는 清掃研究所 여기 業務分掌에 있어서 說明이 명확하지 않아요. 새로 新設되는 清掃研究所, 市政研究院하고는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說得力이 없는 이야기지만 현재 既存에 있는 組織, 그리고 本部 下部組織으로 들어가는 이 組織, 거기에 있는 處理事業所나 衛生處理場이 研究業務와 새로 新設되는 清掃研究所 業務 그 業務分掌이 明確하지를 않습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명확하지가 않아요, 答辯하신 것이.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제가 여러 가지 조금 뭏해서 자꾸 그

런 것 같은데, 이 清掃에 아까 蘭芝島쓰레기處理場하고 그 다음에 糞尿處理場의 그 研究라고 하는 것은 같은 研究라는 이야기 중에서 市政開發研究도 있고, 또 清掃研究所의 研究도 있고, 그 研究란 말이 같은 用語를 가지고 우리 崔委員님이 指摘을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研究하는 그 범위와 그 내용이 그 構成體 組織을 보면 과연 거기에 합당한 研究를 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文脈上으로는 研究로 나와 있습니다만 組織을 보시면 지금까지 崔委員님이 指摘하시고, 우리가 여기서 論議되었던 그러한 깊은 研究를 거기서 과연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結論이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崔明鎭 委員; 아니 既存에 業務分掌에서 研究業務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活性化가 안 되어 있으면 活性化가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별도로 研究業務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活性化 問題인데, 活性化 되도록 모든 措置를, 豫算上의 措置라든지, 人員上의 措置라든지 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이 業務分掌 놔두고 동일한 業務를 갖는 研究所를 따로 設置할 하등 理由가 없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러니까 研究所가 생기면서 그것을 基礎로 해서 研究所가 좀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런.....

○崔明鎭 委員; 그러면 蘭芝島쓰레기處理事業所나 衛生處理場에 分掌되어 있는 研究業務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廢止되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부분적으로 거기도 해야 될 일이 저희들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崔明鎭 委員; 이렇게 體系없이 무슨 研究가 있습니까? 研究라는 것이, 研究라는 것은 예를 들면 交通問題하고 環境問題 그리고 清掃問題하고도 間接적으로 전부 聯關이 되어 있습니다.

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다 聯關이 되어 있죠.

○崔明鎭 委員; 그것은 아까 室長께서도 말씀하시고 지금 答辯에서도 말씀하셨는데 聯關이 되어 있는 研究를 蘭芝島 研究 따로, 衛生處理場 研究 따로, 清掃研究所 研究 따로 이게 됩니까? 市政研究院 研究 따로, 衛生環境研究所 研究 따로, 어떻게 해서 여기서 좋은 研究結果가 나오니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業務分掌이, 동일한 業務를 部署만 달리해서 이렇게 맡겨 놔 보십시오. 責任感도 없어져요. 어떤 組織 社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사람에게 딱 일정한 業務分掌을 맡겨 주고 그 사람한테 모든 責任을 주면 그 業務가 能率的으로, 效率的으로, 合理的으로 進行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業務를 이렇게 맡겨 줘 보세요. 아, 내가 안 해도 저 사람이 하고, 여기서 안 해도 저군데서 하고 이런 의타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納得이 안 갑니다, 이것은.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지금 研究라는 이 問題 때문에 자꾸 일이 重複된 것 같은 그런 감이 들어가고, 또 지금 答辯을 드리고 있는.....

○崔明鎭 委員;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 委員들이나 서울市民들, 그냥 機構 組織만 확장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業務分掌이 명확하게 區別되고 또 과거에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 이것을 納得이 될 수 있도록 說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根據資料를 提示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까지 過程이 이렇게 이렇게 研究해 왔고, 이 分掌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答辯을 드리고 있는 室長의 立場이

그 用語에 지금 어떻게 휘말리다 보니까 充分하게 傳達이 잘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말의 表現이 제대로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이 用語 問題에 있어서 사실상 지금 蘭芝島 處理事業所라든지 終末處理事業所에서 특별히 무슨 研究를 한 그런 機能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 問題에 대해서는, 이 用語의 問題에 있어서는 用語의 整理를 한 번 해 보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실에 맞도록.

○崔明鎭 委員; 그리고.....

○委員長 朴尙東; 崔明鎭 委員, 다른 委員에게도 質疑를 할 수 있는 時間을 좀 주셔야겠습니다.

○崔明鎭 委員; 아니 하나만 더 짚어야 합니다.

○委員長 朴尙東; 간략하게.....

○崔明鎭 委員; 어제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公務員의 種類, 이것을 規則으로 委任하는 法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答辯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公務員의 種類라 해서 地方自治法 第103條第1項에 根據해서 定員을 規則으로 정하는 根據를 마련해 가지고 있고, 公務員의 種類는 地方公務員法 第2條에 의해서 公務員은 經歷職 또는 特殊 經歷職으로 해서 經歷職에는 一般公務員, 特定職, 機能職, 特殊 經歷職에는 政務職, 別定職, 專門職, 雇傭職으로 한다고 이렇게 포괄 規定을 하고 있습니다.

○崔明鎭 委員; 아니 그것이 어떻게 公務員 種類입니까? 地方自治法 第103條가 公務員種類까지 어떻게 規則으로 정한다고 委任이 되어 있습니까? 定員밖에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서 부담하

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定員밖에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여기다 公務員 種類까지 이것을 連結을 시킵니까? 內務部令이 정한 規定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規則으로 정한다, 定員만 委任이 된 것입니다, 地方自治法 第103條 어디에 種類까지 나와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러니까 그 定員속에는 公務員의 種類도 같이 포함이.....

○崔明鎭 委員; 種類가 어떻게 포함이 됩니까? 그러면 이것이 모든 種類까지 포함되면 여기에서 清掃研究所, 蘭芝島쓰레기 綜合處理事業所, 衛生處理場 이것도 全部 委任이 되는 것입니까? 職級도 전부.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지금.....

○崔明鎭 委員; 公務員의 種類가 어디 委任이 됩니까, 規則으로. 이 組織表 안으로 나온 것 이것이 全部 條例로 들어가야지 어떻게 委任 됩니까, 規則으로. 法에 그렇게 規則으로 委任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第103條에 어디 이 規定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우리가 아직까지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法條文을 갖다가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大統領令 第23條에 보면 定員의 配定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定員의 配定이라 되어 있는데 「公務員의 定員은 職級別로 配定하되 다음 各戶의 基準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定員하면 職級別로 들어가는 것으로 여기 지금 이렇게 解釋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崔明鎭 委員; 大統領令이 앞섭니까? 法이 앞섭니까? 어느 것이 上位法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法에서 정하지 못한 細部事項을 승
이.....

○崔明鎭 委員; 法에서 딱 정해서 나왔잖습니까? 地方自治法
第103條.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定員만 나왔지 職級別 種類
는 안 나와 있습니다. 種類도 規則으로 정한다면 이 法도 필
요가 없어요, 條例도. 事業本部 本部長도 規則으로 딱 정해서
하면 되지 별도로 條例를 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公務員의 定員에 관해서 地方自治法
에 나와 있고, 公務員의 種類에 관해서.....

○崔明鎭 委員; 定員에는 나와 있지만 種類까지.....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 定員의 內容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地方自治法을 根據로 해서 大統領승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大統領승에.....

○崔明鎭 委員; 거기에서 어떻게 種類까지 規則으로 정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 어디 大統領승에 公務員 種類를 規則으로
정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다른 말씀을 하지 마시고 公務員
種類를 規則으로 정한다, 거기 나와 있는 그 條文만 말씀해
보십시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여기 第103條 地方自治團體 公務員
해서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경비로써 부담하
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
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崔明鎭 委員; 그것은 本委員이指摘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崔明鎭 委員; 種類란 文字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定員만
나와 있지. 定員하고 種類는 틀립니다. 公務員의 種類라는 것
은 이 機構表에 나와 있지만 事業本部長, 淸掃研究所長, 施設

管理局長, 清掃局長, 業務部長, 總務部長 이런 것이 種類 아
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것은 定員이 職級別 定員이라고 그
러는 것인데요.....

○崔明鎭 委員; 職級別 種類 아십니까? 職級別 種類.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定員입니다, 그것은. 種類가 아니고
定員입니다. 職級別 定員이지 種類가 아닙니다.

○崔明鎭 委員; 公務員 種類는 그럼 뭘 이야기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公務員의 種類는 地方公務員法 第2
條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企劃管理室長이나 여
기 밑에 있는 우리 職員들은 公務員의 種類에 것이 아니고
모두 몇 명이 필요하냐 하는 公務員의 定員에 속하는 것이고,
여기에 어떤 職種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地方公務員法
에 의해서 公務員의 種類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崔明鎭 委員; 그러니까 지금 第103條에 이 規定에는 定員
만 나와 있지 種類는 그 규칙으로 정할 수 없다고 나와 있어
요. 그리고 서울시條例를 보면 어디 條例든지 다 機構表가 이
렇게 나와 있습니다. 本部長 두고, 뭣 두고, 무슨 課 두고, 무
슨 部를 둔다고 條例로서 規定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條例로
規定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本委員의 뜻은 이런 것을 規
則으로 委任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地方自治法 第103條에
분명히 定員만 規則으로 委任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機構라든지 이 種類 이것은 規則으로 委任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委員長 朴尙東; 그 內容은 部分的인 分野면서 물론 중요한
性格을 띠겠지만 崔委員께서 다음에 그 內容에 대한 것은 答
辯을 듣도록 하고 우리가 設置 條例案을 큰 問題를 가지고

우리가 좀.....

○崔明鎭 委員; 그러니까 設置條例案 自體도 중요한데, 여기에 있어서도 이것까지 전부 놓고 檢討를 해야 됩니다. 設置條例案하고, 公務員 種類를 어떻게 둘 것인가, 機構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지금 이것은 그냥 우리한테 준 종이쪽지지 이 條例案하고는 전혀 關聯이 안 됩니다. 條例案에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지금 條例案에 보시면 設置 目的, 그 다음에 擔當 業務, 그 다음에 第3條에 本部長하고 本部長 숫자와 그 다음에 本部長의 職級 그 다음에 業務 그 다음에 그 下部機關으로서 本部長 밑에 獨立된 事業所라든가 이런 것을 두고, 그 다음에 그 本部長 以下에 두는 公務員의 種類와 職級別 定員은 規則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崔委員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 目 自體를 規則으로 정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崔明鎭 委員; 條例로 정할 수 있는 部分이 있고, 規則으로 정할 수 있는 部分이 있는데, 地方自治法 第103條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숫자, 예를 들면 作業管理部에 열 명 둘 것인가, 다섯 명 둘 것인가, 한 명 둘 것인가 이런 것은 規則으로 정할 수 있지만 作業管理部를 둘 것인가, 안 둘 것인가 이런 機構表까지는 種類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種類로 볼 수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本部長 밑에 있는 그 機構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崔明鎭 委員; 機構와 公務員의 種類 있지 않습니까? 一般職 公務員, 行政職 公務員, 技術職 公務員 이런 것도 條例로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지 지금 第103條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定員밖에 안 나와 있어요, 定員. 다섯 명이냐, 열 명이냐,

한 名이야 이것만 規則으로 委任이 되어야지......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글썽 그러니까 그 定員이라는 意味는 그 속에 職級別 定員이 포함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解釋을 잘 못 하는 것 같은데요......

○崔明鎭 委員; 法을 그렇게 解釋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아니 解釋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定員 그러면 저희가 우리 課長하고 相議할 때에......

○崔明鎭 委員; 그러면 條例에라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이 앞에 公務員 種類 및 職級別 定員 이것은 떼어야 됩니다. 第103條에 나와 있듯이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種類 및 職級別 이것은 地方自治法에도 이런 表現이 없으니까 이것을 削除를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뭐를요?

○崔明鎭 委員; 條例에서 지금 이야기 나온 第5條.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아니 公務員이 몇 명 있다는 것은 이야기를 해야지요.

○崔明鎭 委員; 그러니까 公務員의 種類 및 職級別 定員 이렇게 나와 있는데 地方自治法 第103條에 나와 있듯이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種類 및 職級別 이것은 削除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아, 重複해 쓸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요?

○崔明鎭 委員; 그렇지요. 그런 意味라면, 同一한 意味로 解釋하신다면...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맞습니다. 그렇게 써도 됩니다.

○崔明鎭 委員; 種類라면 이것이 그렇게 解釋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죠.

○委員長 朴尙東; 그건 뭐…….

○金炯奎 委員; 지금 崔明鎭 委員 質問을 우리 室長이 잘못 誤解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第3條하고 第4條를 가만히 보세요. 本部長 1人을 두는 것은 機關의, 機構의 責任者 아닙니까? 그래서 第4條第2項에서 淸掃研究所長은 地方副理事官 또는 3級相當 別定職 地方公務員, 蘭芝島쓰레기綜合處理事務所長은 地方書記官, 衛生處理長은 地方機械技佐 또는 地方化工技佐 이것이 種類가 거의 다 되어 있어요.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公務員의 種類가 거의 文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第5條에 公務員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도 더 下位職級의 公務員에 대한 問題니까 崔明鎭 委員이 質問하는 것을 빨리 구분을 못하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公務員의 種類 소리만 빼고 職級別 定員은 따로 規則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도 무방하리라고 봐요. 그런데 室長께서 對答이 자꾸 혼돈되어 가지고 하니까 길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技術關係에서는 別定職이나 또는 地方副理事官 또 地方書記官에서 地方機械技佐, 地方化工技佐 다 중요한 부분의 이런 問題는, 機能은 다 지금 區分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이제 그것은 職級別…….

○金炯奎 委員; 아주 下位公務員에 대한 地方公務員 問題인데 이것은 그 所屬되어 있는 職級別로 해서 事業本部長이 適材 適所하게 職能別로 이렇게 해서…….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아까 말씀드린 대로 地方公務員法上에 公務員의 種類에 一般職하고 特殊 經歷職이 있는데 淸掃研究所에 專門職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것은 포괄 規定으로다 이렇게 넣는 것이고, 대부분 다 條例를 만들 때 種類와 職級別 定員을 저희가 썼습니다. 썼는데, 種類를 넣었다고 그래서 무슨 큰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니까 뭐 빼라고 그러시면 빼겠습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金炯奎 委員;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기왕에 地方自治法 第103條에 定員이라는 말에 대한 어휘의 解釋이 問題가 있고, 또 그것이 崔明鎭 委員이 指摘한 바가 있으므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일을 깨우치는 立場에서 本부와 下部機關에 두는 公務員의 種類, 그 種類 소리만 빼고 公務員의 職級別 定員은 따로 規則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도 事業本部 條例案은 問題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알겠습니다. 種類 빼겠습니다.

○金炯奎 委員; 그러면 간단하지 않아요. 種類밋을 빼면 되니까.....

○委員長 朴尙東; 種類 빼지요. 崔委員 그러면 되겠습니까? 種類 빼지요.

○崔明鎭 委員; 네.

○柳準向 委員; 室長님!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柳準向 委員; 蘭芝島쓰레기綜合處理場 여기도 무슨 研究所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없습니다.

○柳準向 委員; 또 衛生處理場에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거기도 없습니다.

○柳準向 委員; 아까 무슨 研究所가 사방에 있는 것 같이 복잡한데.....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아니에요. 아까 崔委員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業務 內容을 만들 때에 그렇게 그런 用語를 넣어 놓았는데 사실상 그것이 하나도 거기에 적합한 어떤 制度的 裝置 補完이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柳準向 委員; 그렇다면 한 가지만 제가 더 묻겠는데 아까 崔委員이 質疑한 것과 같이 이 清掃業務를 研究하는 데서 이 研究所가 우리 市政開發研究所하고 거리가 먼 것입니까, 거기에 속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할 수 없지요.

○柳準向 委員; 할 수 없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柳準向 委員; 할 수 없다면 확실히 할 수 없다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할 수 없습니다.

○柳準向 委員; 어떻게 하면 하는 것도 같고 어떻게 하면 안 하는 것 같은데, 미지근한데. 아주 할 수 없다는 것을 딱 부러지게 말씀을.....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확실하게 할 수 없습니다.

○柳準向 委員; 그렇다면 제가 아까 同意 發言을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많이 물어도 보고 時間도 무척 갔는데 우리 이것을 終結 지읍시다.

○委員長 朴尙東; 네.

○金炯奎 委員; 그러니까 柳委員께서 생각하고 있는 機構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 朴尙東; 아니 討論 終結을 하고.....

(「아니, 이것은 이야기해도 되는 건데」 하는 委員 있음)

네. 그것 이야기 하시죠.

○柳準向 委員; 제가 아까 動議案을 낸 것은 事業本部長 밑에

清掃研究所를 두는데 그 밑에 2個 部가 있지 않습니까? 이 2個 部를 없애고 專門委員으로 研究所를 設置하고, 그 다음에 清掃局에서는 總務部와 業務部를 두 個를 한 個로 합치고, 또 施設管理局에 있어서 1부와 2부를 합쳐서 1個 部로 만들고 이렇게 編制를 좀 縮小시키자 이 案입니다.

○委員長 朴尙東; 그러니까 清掃研究所에 清掃研究部, 施設研究部를 한 個 部로만 만들고 그리고 業務部를 總務部로 統合을 하고.....

○柳準向 委員; 總務部로 만들든 庶務部로 만들든 한 部로 만들자 그것입니다.

○委員長 朴尙東; 네, 그리고 施設 1· 2부를 施設部로 하나로 統合을 하고 이러한 意見이시죠?

○柳準向 委員; 네, 그렇습니다.

○金炯奎 委員; 제가 다시 우리 柳委員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清掃研究所는 두고 밑에 清掃研究部和 施設研究部는 統廢合해서 하나로 두고.....

○柳準向 委員; 그것을 統廢合해서 專門委員으로다 研究所 안에 하나로 뒤 버립시다.

○委員長 朴尙東; 研究部지, 그러니까 專門部로써.....

○柳準向 委員; 그렇지요, 研究部.

○金炯奎 委員; 運營課는 없어지는 겁니까?

○柳準向 委員; 필요 없지요.

○金炯奎 委員; 필요 없고, 清掃研究所의 研究部로 하나 두고, 또 清掃局과 施設管理局이 있는데 이것 두 個는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清掃局 해서 施設管理局을 없애 버렸으면 쓰겠는데.

○柳準向 委員; 施設管理局을?

- 金炯奎 委員; 네.
- 柳準向 委員; 그것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 金炯奎 委員; 그러면 우리 柳委員 말씀해 보세요. 우선 柳委員 생각을.
- 柳準向 委員; 네, 清掃하는 사람들 따로, 또 清掃를 하기 위한 施設하는 것은 따로 分離를 해 줘야지 그것을 같이 묶으면 너무 광범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한 部로 만드는 것 보다 課를 여러 개 만들면 일이야 되기는 됩니다. 그러나 기왕에 2個 局을 두고서 그 밑에 課를 축소시키는 것이 일하는데 좀 效果的이지 않을까?
- 金炯奎 委員; 제 생각은.....
- 崔明鎭 委員; 아니, 이게 지금 條例로 나온 것도 아닌데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 金炯奎 委員;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 柳準向 委員; 條例案을 지금 우리가 審議하는 것 아니에요?
- 崔明鎭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條例案에 이것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機構表가. 별첨부.....
- 柳準向 委員; 이것이 나온 것이 지금 條例案에 나온 것 아니에요?
- 崔明鎭 委員; 아니에요. 條例案에 이게 規定이 없어요, 이 規定이 지금.
- 金炯奎 委員; 아니 그래서.....
- 柳準向 委員; 그럼 이것은 왜 준거예요?
- 崔明鎭 委員; 이것은 그냥 任意대로 만들어서 이런 計劃이 있다 이 정도로 준 것이지.
- 兪相根 委員; 條例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崔明鎭 委員; 條例案에 지금 들어가 있는 文句가 하나도 없어요, 이 機構案이.

○金炯奎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插入해서 넣어야지요.

○委員長 朴尙東; 일단 그것이 連繫가 되었기 때문에 機構表가 나온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金炯奎 委員; 그리고 제 생각에는, 柳委員하고 저하고 묻고 하는데.....

○崔明鎭 委員; 아니 이것이 定式的으로 하려면 條例案에 들어가야 됩니다. 機構表가 條例案으로 添附 文書로 들어가야 돼요.

○金炯奎 委員; 제 생각은 淸掃研究所에 研究部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施設도 해야 되겠고 다른 環境衛生에 대한 問題도 研究가 되지 않겠습니까?

○柳準向 委員; 네.

○金炯奎 委員; 그러면 執行만 하는 것이 施設企劃部 施設 1·2部 이렇게 案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案대로 하면 淸掃局은 실지로 作業을 하는 것이 위주고 施設管理局은 施設하는 것이 위주고요.

○柳準向 委員; 그렇지요.

○金炯奎 委員; 그렇죠. 그러니까 淸掃研究所를 둔다고 한다면 施設管理局 2·3級을 없애고 淸掃研究所에서 施設하는 것을 主管해서 施行을 하면 됩니다.

○柳準向 委員; 조금 다른데요. 研究하고 施設하고는 施設은 行動이고 研究는 行動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다른데 概念이.....

○金炯奎 委員; 아니 그러니까 아까 答辯에 우리 淸掃研究所라고 하는 問題를.....

○委員長 朴尙東; 金委員님, 됐습니다. 이렇게 하지요. 質疑는 거의 委員들이 자기 궁금한 점에 대한 質疑를 하셨으니까 質疑 終結을 일단 宣言을 하고…….

○崔明鎭 委員; 質疑 終結하면……. 財政投融資基金이 있는데요.

○委員長 朴尙東; 그것을 일단 議事進行上 1項, 2項, 3項 案件이 上程되었는데 便宜上 2號 案件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崔明鎭 委員; 2號 案件부터요?

○委員長 朴尙東; 그래서 5分間만 停會를 하고 일단 表決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먼저 宣布합니다.

○崔明鎭 委員; 2號 案件만…….

○委員長 朴尙東; 2號 案件 清掃條例設置案에 대한 것을 質疑 終結 宣布하고, 5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6時 25分 會議中止)

(16時 34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尙東; 續開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清掃事業本部設置條例案에 대해서 同意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네, 말씀하시지요.

○柳準向 委員; 이 중요한 쓰레기問題, 쓰레기事業本部를 진작에 設置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어서 지금 서울市民이 쓰레기量으로 굉장히 隘路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틀 간에 걸쳐서 충분한 質疑와 答辯을 통해서 많은 討議가 되었

는데 다시 한 번 整理해서 제가 正式 動議案을 내겠습니다.

쓰레기本部長 傘下에 清掃研究所 지금 여기에 草案에는 行政職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技術職으로 바꾸고, 清掃研究所 傘下에는 行政課와 研究部를 設置하고, 清掃局에는 總務部와 作業管理部 2個 部를 두는 것으로 하고 施設管理局에는 施設 企劃部와 施設部, 2個 部를 두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 蘭芝 島쓰레기綜合處理事業所와 衛生處理場을 두는 것으로 機構表를 다시 縮小시켜서 改正하는 方向으로 하고, 그 다음에 條例案 中 第4條 밑인가요?

○委員長 朴尙東; 네, 第4條 下部機關.

○柳準向 委員; 네, 下部組織은 別添 機構表와 같다 라는 한 줄을 더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機構表를.....

○委員長 朴尙東; 第4條에다 衛生處理場을 두고, 그러니까 이 령습니다. 下部機關 "本部長 밑에 清掃研究所, 난지도綜合處理事業所 및 衛生處理場을 두고 機構는 別表와 같다" 이것을 插入합니다, 設置條例案에. 그러시죠, 柳準向 委員님!

○柳準向 委員; 네, 그렇습니다.

○李秉守 委員; 衛生處理場을 두되 機構는 別表와 같다.

○柳準向 委員; 네, 別表와 같다. 이와 같이 正式 動議를 합니다.

○委員長 朴尙東; 네, 再請 있습니까?

(「네」 하는 委員 있음)

○金炯奎 委員; 아니, 그런데 아까 運營課를 行政課라고.....

○柳準向 委員; 아니, 運營課.....

○委員長 朴尙東; 그대로.....

○金炯奎 委員; 그런데 말씀을 行政課로 했으니까 그것을 訂正을 해야 되고.....

○柳準向 委員; 죄송합니다.

○委員長 朴尙東; 行政職을 技術職으로 바꾸는 것 하고.....

○李秉守 委員; 그런데 그것도 技術職으로 막연히 하지 말고 地方施設 技正 또는 地方工業 技正으로 아예 못을 박으면 어떨습니까?

○委員長 朴尙東; 그것은 技術職으로, 行政職이 아니고 技術職으로 하면.....

이제 됐습니다. 委員님들 質疑는 終結되었기 때문에 柳準向 委員의 動議案에 再請있습니까?

(「再請이요」 하는 委員 있음)

三清 있습니까?

(「네」 하는 委員 있음)

感謝합니다.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
(參考)

서울特別市清掃事業本部設置條例案

(뒤에 실음)
.....

○委員長 朴尙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號 案件 서울特別市財政投融資基金設置條例案에 대한 質疑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委員님들 가능한 한 質疑하는 過程에 고루 고루 여러 委員님들께서 重複되지 않게 質疑를 해 주시면 우리 會議에 能率을 기할 것 같습니다.

委員님들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投融資基金設置條例案에 대한 것은 3日前에도 이 問題에 대한 것을 深度있게 質疑를 했습니다. 오늘 財政投融資基金設置條例案도 終結지어야

되기 때문에 좋은 內容의 質疑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明鎭 委員!

○崔明鎭 委員; 그제 本 委員會에서 指摘된 財政投融資基金設置條例案의 違法 不當한 條項들 削除 내지 改正 方向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 朴尙東; 企劃管理室長께서는, 지난번 質疑를 통해서 서울特別市財政投融資基金設置條例案에 대한 質疑를 했습니다. 그 內容에 대해서, 그 동안 檢討하신 內容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지난번에 崔明鎭 委員께서 質疑하신 것 가운데서 第2條 基金의 財源에 있어서 4號에 自治區로부터의 積立金과 豫受金, 그 다음에 地方債 發行으로 造成된 資金, 그 다음에 一時 借入金 이 세 가지 項은 問題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質疑를 하신 것으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問題 가운데에서 그날도 잠깐 答辯을 올렸지만 自治區로부터의 積立金이나 豫受金 이것은 自治區 議會議의 議決을 거치지 아니하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地方債 發行으로 造成된 資金 가운데 地方債 發行은 第2條의 地方債 發行으로 造成된 資金 이라고 넣었다고 그래서 地方債가 發行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別途의 地方債 發行에 대한 議會議의 所定 節次를 밟지 아니하면 地方債를 發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여기다 明文으로 表示는 안 했습니다만 上位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理解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그 文句를 明文化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一時借入金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가 議會議의 承認을 받지 않아도 되는 事項이기

때문에 이것은 崔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執行部가 恣意的으로 行使할 수 있다고 判斷하신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削除를 하겠습니다.

○崔明鎭 委員; 明文으로 넣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은 明文으로 規定해야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저희가 當初에 말씀.....

○崔明鎭 委員; 나중에 條例 解釋上 또 法 解釋上 問題가 생길 수 있고, 특히 第7條나 第8條, 第8條를 보면 2項이 「지방채의 발행조건, 방법 및 절차와 그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알겠습니다. 그래서 地方債 發行은 重複되는 감이 있지만 崔委員님의 말씀에 따라서 高見을 들어서 "市長은 基金의 財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議會의 議決을 얻어 基金에 負擔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의회 議決을 얻어"를 갖다가 집어넣겠습니다. 插入을 하고, 그 다음 2號에 있는 「지방채의 발행 조건과 방법, 절차의 상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는 削除를 하겠습니다.

○崔明鎭 委員; 네, 그리고 自治區로부터의 積立金 問題 그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저희 생각은 活性化를 위해서 두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했는데 第7條 自治區로부터의 預託과 積立 해서 1號, 2號가 있는데 1號는 놔두고 2號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되거나 적립된 재원은 자치구의 營繕事業費用으로 이를 용자할 수 있다」 이렇게 좀 改正을 했으면 하는 그 말씀의 趣旨 같아서 이렇게 한 번 해보고, 3號는 削除해도 相關 없습니다. 3號는 우리 崔委員님

말씀대로 削除하도록 하겠습니다.

○崔明鎭 委員; 第7條 1項도 "自治區는 自治區의 基本財政需要에 充當하고 餘裕가 있는 財源의 一部를 地方自治區 議會의 議決을 거친 뒤" 그것을 넣으셔야 됩니다. 여기도 明文에.....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좋지요, 뭐.

○崔明鎭 委員; 네, 明文에 規定을 해야 되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좋습니다. 明文에 넣겠습니다.

○崔明鎭 委員; 그리고 基金의 用途 난을 보면 이것이 包括的으로 規定이 되어 있거든요. 基金의 원래 性格은 일정한 目的이나 特定 目的을 위해서 積立하는 資金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自治區에서 積立金이 自治區에 필요한 營繕事業등으로만 使用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市에 필요 資金으로도 使用될 수 有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規制 措置.....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래서 그렇게 안하도록 아까 말씀드린 第7條第2項에 「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撥款되거나 積立된 財源은 자치구의 營繕사업 費用으로 이를 用者할 수 있다」 이렇게 限定을 지어 났습니다. 第7條의 自治區로부터의 預託 및 積立金 그 項에 대해서.....

○崔明鎭 委員; 그것은 自治區의 營繕事業으로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렇지요.

○崔明鎭 委員; 條項을, 그것을 明文으로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그것은 여기 지금 말이지요.....

○崔明鎭 委員; 그리고 地方債로써 發行된 것은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서 地方債 發行할 수 있지만 地方債로 發行된 資金은 그 用途 분명히 規定이 되어 있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崔明鎭 委員; 물론 議會의 議決을 받기 전에 어떤 用途로, 基金의 用途로 使用한다고 하겠지만 예를 들면 그 地方自治法 第115條에 나와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 또는 비상재해복구」 이렇게 딱 用途가 規定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安全裝置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地方債를 承認을 얻을 때에 그 額數와 用途가 指定되지 아니하면 委員님들이 議決을 안 해 주십니다.

○崔明鎭 委員; 아니 그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이 條例에서도 확실하게 安全裝置는 마련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地方債로 造成된 資金을 用途 난을 보면 딱 用途에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래 基金 가지고 이 基金 끌어다가 이 目的 目的 다 使用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用途를 보면. "基金은 다음 각 號의 1에 該當하는 用途에 使用한다" 이렇게 包括적으로 規定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但書 條項을 붙여서 "地方債 發行으로 造成된 資金은" 해서 "地方自治法에 規定된 그 用途 外의 用途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것은 條例로 明文化해야 된다고 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지금 崔委員님 말씀 다 해서 第8條2號에, 지금 가지고 계신 案에 보면 「地方債 發行條件, 方法, 節次, 償還에 관한 事項은 規則으로 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削除하는 대신에 "地方債 發行으로 造成된 資金은 議會에서 議決한 事業 目的으로만 使用할 수 있다" 그렇게 할까요?

어느 것이 委員님들에게 安全하게 保障이 되시는지.....

○李秉守 委員; 第3條의 基金의 用途가 1, 2, 3 明文化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그래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딱 나와 있는데.....

○李秉守 委員; 꼬리표 안 붙여봐도.....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結果的으로는 第3條1號에 해당되는 부분이 주로 地方債 發行으로 充當이 되기 때문에.....

○崔明鎭 委員; 방금 말씀 하셨듯이 "議會에서 指定한 用途로만 사용한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그렇게 하죠.

○崔明鎭 委員; 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전부 指定해 주시면 더 좋지요.

○崔明鎭 委員; 그리고 投融資基金運營審議會, 여기에 審議會의 審議事項들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事項들이 많이 있거든요. 議會 議員들이 여기 審議會에 들어가서 같이 審議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글썽 저 個人的으로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을 明文으로 넣어야 되느냐 하는 問題는 사실상 조금 제가 이 條例를 만들면서 약간의 疑懼心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審議委員會는, 저희가 일단은 審議委員會의 委員長을 企劃管理室長이 맡기로 지금은 規則으로다 그렇게 草案을 잡아 냈습니다. 企劃管理室長이 말도록 해서 하는데, 企劃管理室長과 그 다음에 일부 필요한 局長 그리고 斯界의 資金運營, 財政運營에 관한 一部 과거 그 系統에 오랫동안 從事를 했거나 學問的인 어떤 經驗이 있는 분 그리고 市議員 약간 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여기다 文脈으로 表示하는 것이 괜찮은 건지.....

○崔明鎭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安全裝置로써 運營審議會 設置를 하는데 원래 基金이라는 것은 議會에 報告만 할

따름이지 議會의 事前承認이나 事後承認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基金法에 의해서.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崔明鎭 委員; 그렇기 때문에 議會에서는 執行部에 이 막대한 資金, 또 막대한 事業에 動員되는 이런 問題를 審議會에 들어가서 制定하거나 같이 審議하지 않으면 基金 使用에 대해서 關與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글썽 옳은 말씀이세요. 옳은 말씀인데…….

○崔明鎭 委員; 네, 길이 없기 때문에, 議會 議員들고, 여러가지 方法論입니다만 審議會의 委員들은 서울市議會 議長과 協議해서 人選한다 이런 條項을 넣으신다든지 審議會의 委員들을 過半數 이상을 包摂시켜준다든지, 왜 그러냐 하면 이 基金이 議會에 報告되어서 承認받고, 同意 받고 그럴 수 있는 性質이 전혀 못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基金이, 막대한 資金 수 천억 원에서 많으면 수조원, 수십조 원까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간단한 예로 石油事業基金 設置 目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원래 設置 目的대로 使用하려고 基金을 보니까 그 때는 基金이 바닥이 나고, 다 다른 目的으로 使用이 되고, 또 融資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원래 設置條例案 目的은 아주 좋은데 나중에 이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서 긴급히 돈이 필요할 때, 資金이 필요할 때 資金이 없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서서 企劃管理室長께서 條例案에 넣고, 빼고 또 改正하고 하는 것은 法的인 問題, 法에 위배되는 事項들이었으니까 그렇게 했지만 安全裝置로써 議會가 基金의 使用이나

運營에 관해서는 깊이 關與를 해야 되니까 關與할 수 있는 길은 審議會에 議會議員들이 많이 들어가서 活動하는 方法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條例案에 반드시 包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말씀하시는 趣旨는 알겠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돈이 들어오는 길하고 나가는 길이 지금 우리 崔明鎭 委員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쪽 整理해서 보면 들어오는 길도 委員님들의 決定에 따라야 되고, 나가는 길도 決定에 따릅니다. 이것이 여기서 무슨 그렇게 거창하게.....

○崔明鎭 委員; 아니, 지금 들어오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몇 兆원, 몇 千億을 넣어 놓고 그 審議委員會에서 交通整理할 수 있는 그런 立場이 아니거든요.

○崔明鎭 委員; 基金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規制하는 것은 法에 規定되어 있는 自治區로부터의 積立金과 地方債 發行으로 造成된 資金, 지금 이것에 관해서는 法에 地方議會의 議決을 事前에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條例案에 明文으로 넣는 것이지 設置 目的이 達成된 特別會計剩餘金 중 出捐金 이런 것이라든지, 서울特別市가 직접 設置 經營하는 地方公企業이나.....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러면 알겠습니다.

○崔明鎭 委員; 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알겠습니다. 뭐 걱정하시는.....

○崔明鎭 委員; 基金, 財源으로 使用되는 基金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알겠습니다. 一時借入金도 削除하고 다 削除했는데, 아까 報告드린 대로 一時借入金도 제가 削除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融通性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融通性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쓰는 問題에 관해서 市議會에서 監視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예를 들면 市議員 약간 人을 審議會 委員으로 둔다 하는 問題를 條例나 어디에 넣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예를 들면 저희가 사실상으로 委員님들에게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公式答辯을 통해서 委員님을 몇 분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하고 일단 한 번 시작을 해 보신 다음에 이것이 法으로써 條例로써 해도 괜찮겠다, 아니겠다 하는 問題가 대두가 되는 것은 저는 상당한 理由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상 그 體系上으로 보아서 市政을 監督하는 立場이니까 直接 들어가서 監督을 하겠다 하시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은 內容은 알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明文化 하는 것이 市議會에 대해서 어떤 影響이 있겠느냐,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절반 아니라 전부다라도 市議員님들만 構成을 하자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崔明鎭 委員;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基金이 이 法에도 나와 있지만 地方財政法 第110條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提出만 합니다. 다른 것도 提出 안 해요, 基金運營計劃書하고 決算報告書만 地方議會에 提出해요. 提出만 할 따름이지 提出해서 承認받는 것도 아니고, 監督받는 것도 아닙니다. 同意 받는 것도 아니에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러니까 잘못.....

○崔明鎭 委員; 막대한 基金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수천억, 수조원까지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基金이 불어나면 수조원까지도 분명히 됩니다. 그것은 지금 얼마가 基金으로 될 것

이다 그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基金이 모이다 보면 그렇게까지 됩니다. 그 막대한 資金, 지금 現在 우리 地方議會에서는 몇 百萬원, 몇 千萬원도 다 事業 妥當性 檢討하고 그 資金의 豫算과 歲入·歲出 豫算 事前承認 받고 決算에서도 事前承認 받고 하는데 基金으로 설치된 이 資金들은 그런 牽制裝置, 干涉裝置 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地方議會가 있으면 서울市長이 設置해서 運營하는 이 基金에 대해서, 적은 돈이 아니고 막대한 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牽制裝置가 있어야 됩니다. 그 牽制裝置에 들어갈 수 있는 方法은 거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內容中에 議員으로서 運營 審議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干涉하는 것이 그렇게 合理的이지 못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까지 안 하면 나중에 基金이 바닥이 났다든지, 基金에 問題가 생겼을 때 責任을 누가 집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아니 제가 그런 말씀이 아니고, 議員님들 들어오시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崔明鎭 委員; 아니 그러니깐 여기에다 條例같은 것에 明文으로 넣어 놓고 들어가는 것하고, 그냥 執行部에서 "아, 議員님 들어오십시오, 審議會에 들어오십시오" 해서 들어가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崔委員님!

○崔明鎭 委員; 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만일에 委員會 定員을 열 名으로 했다 그러면 議員님들이 몇 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까?

○崔明鎭 委員; 그러니까 서울市議會 議長과 協議해서 또는 合議下에 運營審議會 委員을 選定한다, 選任한다 이런 條項을 넣는다든지 그런 條項도 괜찮습니다.

-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지금 저는 그런 問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 崔明鎭 委員; 몇 분이 들어오면 좋겠느냐?
-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열 名이라고 치면, 企劃管理室長이 委員長이 되었는데 定員을 열 名으로 했다, 예를 들면.....
- 崔明鎭 委員; 열 名이라면 本委員이 생각할 때에는 過半數 이상은 들어가서 여기서 積極적으로 參與해야 된다고 봅니다.
- 委員長 朴尙東; 崔委員님, 崔委員님!
- 全潤杓 委員; 條例案에 넣는 것 보다.....
- 委員長 朴尙東; 그것은 너무 이상합니다, 그것은.
- 全潤杓 委員; 構成 및 運營에 관한 事項에 規則으로 할 때에 무슨 可否가 나와야지, 이 條例案에 市議員이 들어간다는 것은 좀 우습지 않아요?
- 崔明鎭 委員; 規則으로 하자고요?
- 委員長 朴尙東; 네, 조금 이상합니다. 그것은 일단 企劃管理室長.....
- 崔明鎭 委員; 꼭 市議員이 안 들어가더라도 서울市議會 議長과 協議나 合議下에 審議會 委員을 選任한다.....
- 全潤杓 委員; 가만 있어봐요. 그것은.....
- 委員長 朴尙東; 그것은 좀 이상합니다.
- 全潤杓 委員; 이렇게 하면 어때요. 審議會 構成· 運營등에 관한 필요한 事項은 規則으로 정한다 할 때에 企劃管理室長이 우리 委員들 다 있는데서 報告할 것이 아니라 委員長하고 協議해서 우리 崔明鎭 委員의 뜻을 反映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여기다 市議員이 들어간다 하는 것은 조금 問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規則에다 委員會 構成에 대해서는 自動적으로 몇 名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것이 나오더라도 거기다 市議員님들을 넣는다는 것은.....

○崔明鎭 委員; 그趣旨를.....

○委員長 朴尙東; 明文化시키기는 조금 뭣해요.

○崔明鎭 委員; 本委員의 말씀은 그런趣旨를 이條例案에 넣든지, 확실하게 해서 서울市議會가 이 막대한資金의 使用에 대해서 깊이 關與를 해야 된다, 過程중에. 事後에 監督이나 事前承認을 받을 수 있는 性質의 것이 못되기 때문에, 基金이라는 것 자체가.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러니까 제가 速記錄에 분명히 企劃管理室長이 委員長을 앞으로 할 텐데.....

○委員長 朴尙東; 여기 記錄이 다 되어 있다고, 記錄이 되고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것을 市長이나 副市長이 基金造成 使用에 대한 委員長職을 맡을 수 없습니다, 用途 審議를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앞으로 얼마가 되더라도 要式行爲에 불과하시지, 절대로 걱정하실 정도의 것은 造成될 까닭이 없다고 저는 자신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못 믿겠으니 市議會가 좀 들여다보자 하신다고 그러면 政府에서도 國會議員이 總理 委囑 받아서 어느 委員會에 끼는 法은 없습니다.....

○崔明鎭 委員; 그러니까 本委員의 말씀은 市議員이 안 들어가더라도 서울市議長과 協議下에 審議會 委員을 人選한다. 選任한다든지.....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것은 안 되지요.

○崔明鎭 委員; 그것은 안 됩니까?

○委員長 朴尙東; 조금 뭣합니다.

○全潤枸 委員; 그것은 아까 제가 얘기하듯이 規則을 정해서 할 때에 우리 委員長하고 企劃管理室長하고 協議해서 어떠한 단도리를 하도록 말이죠.....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한 번도 빠짐없이, 저희 委員會가 開催될 때는 한 번도 빠짐없이 議員님들이 참여하셔서 같이 意見을 나눌 수 있는 機會를 管理室長이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저도 委員님들과 協議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이 정확하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제가 분명히 速記錄에 있으니까 그것은 저한테 말기시면 제가.....

○崔明鎭 委員; 네. 그런 安全裝置가 保障이 된다면 同意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尙東; 네.

○全潤枸 委員; 그만 可決합시다.

○委員長 朴尙東; 그만하시죠. 金炯奎 委員,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金炯奎 委員; 金炯奎입니다.

지금 서울特別市財政投融資基金設置 이것을 보면 이 目的이 참 좋습니다, 아주 훌륭해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마치 中央政府의 韓國銀行과 같은 그런 役割을 하는 것 같고 地方政府의, 말하자면 地方 韓國銀行과 같은 그런 基金으로 運營하겠다 하는데, 참 좋은 생각을 이 자리를 빌어 企劃管理室長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몇 가지 問題點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고마운 基金의 財源이, 쉽게 이야기해서 特別會計나 다른 基金에서 남는 돈을 전부 한곳에 끌어 모으자고 하는 意圖가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아까 그 地方債 發行으로 造成된 資金, 一時借入金 이런 것은 우리 財政投融資基金에서 스스로 빚을 짊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立場에서 財源이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財政投融資基金이라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各 會計別에 의해서 남는 돈 이런 것을 전부 끌어 모아서 한곳에 모은다는데 主 目的이 있는 만큼 제발 이 基金에서까지 빚을 짊어지는 일은 좀 말아야 되겠다, 이래서 第2條 基金의 財源은, 第6條, 第7條는 削除하고 나머지 것만 가지면 이 빚을 짊어지지 않는 그러한 方向의, 基金의 財源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第2條의2項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 계잉여금 중 일정액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純歲計剩餘金이 지금 91年度에 약 3,770億원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92年度 豫算에 歲入으로 잡아 놔는데 이것이 나머지 얼마가 또 생길 것이다 豫想을 해서 그 나머지 부분은 全額을 基金으로 넣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純歲計剩餘金 中에서 歲入豫算에 넣으려면 넣고, 안 넣으려면 안 넣고 이것을 마음대로 하겠다 지금 이런 뜻인데 여기에서 분명한 意志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純歲計剩餘金은 全額 財政投融資基金에 넣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純稅計剩餘金이 住民의 稅金이니까 全額 다음 익년도 歲入豫算에 들어간다는지 이것이 분명한 意志가 필요할 것 같고, 第3條 基金의 用途에 가서 1號, 2號가 거의 豫算上에 意志가 필요할 것 같고, 第3條 基金의 用途에 가서 1號, 2號가 거의 豫算上에 反映을 안고도 또 새로운 한 쪽에 돈 보따리가 있으니까, 歲入이라고 하는 豫算의 돈 보따리 하나

하고, 財政投融資基金이라고 하는 돈 보따리가 또 하나 생기고 이래서 第3條1號, 2號가 이것이 豫算에 反映되어야 될 事業인데 이 작은 돈 보따리에서 이런 事業을 할 수 있는 길이 터진다고 本委員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問題를, 어떻게 執行을 하는 基金의 用途로 보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 室長이 분명히 좀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第3條 基金의 用途에서 4號에 가서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금 융자 및 수해복구융자 등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융자」 이것이 되어 있는데 本委員 생각은 전에 財務經濟委員會에서 우리 市金庫에 대한 資金의 殘額 狀況을 제가 잘 檢討를 했었습니다. 그 때에도 서울市에서 資金의 需要 問題를 供給과 計劃을 잘 세우면 이 遊休資金은 地域經濟 活性化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發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第3條4號에 가서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금 융자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융자」 이렇게 하나 插入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자면 "水害復舊 融資"등은 削除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豫算上에 豫備費를 活用하기 쉬우니까 "傳貫金 融資 및 地域經濟 活性化 등 市民 福祉增進을 위하여 市長이 필요하다고 認定하는 事業에 所要되는 費用의 融資" 이렇게 고쳤으면 하는 생각이 本委員의 생각입니다. 지금 다 記錄을 하시죠?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하고 있습니다.

○金炯奎 委員; 그리고 第5條에 가서 特別會計등의 餘裕資金의 우선 預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특별회계 및 기금은 당해 법률 또는 조례

에 기금에의 예탁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목적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생각하기는 「당해 법률 또는 조례에 기금에의 예탁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것이 들어가놓고 보니까 조금 우스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條例라고 하는 것이 法律의 下位法規요, 또 다른 條例에 이런 預託規定이 없으면 당연히 本條例에 의해서 우리가 設置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굳더더기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當該 法律"에서부터 "경우에도"는 削除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제 意見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疑問이 있는 것은 「당해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이 당해 特別會計 및 基金이라고 하는 것이 本 條例上에 「以下 基金이라 한다」 고 되어 있는데 그 以下 基金과 이 基金과 性質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草案 作成者 說明 좀 해 주세요. 이 基金의 意味가 좀 다른 것 같아서 質問합니다.

그것 說明해 주시고, 6條에 가서 「설치 목적이 달성된 특별회계나 기금의 잉여금 및 현물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에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特別會計에 關與하는 우리 서울市의 關係公務員이 상당히 恣意性이 있어요. 基金에 出捐 또는 出資할 수 있다. 이렇게 상당히 恣意性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本 投融資基金 第2條에 基金의 財源에 가서 다소 瑕疵가 생길 것이 아니냐, 적게 들어올 수가 있지 않느냐, 基金이 적어진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한 意見を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第8條, 第9條는 우리가 一時借入이나 地方債 問題는 각각 發行하는 目的이 있습니다. 그래서 豫算上 필요로 할 때 發行한 目的이 있는데, 또 이 財政投融資基金 여기서까지 그 投融資基金에의 資金을 마련하기 위해서 不特定 用途의 地方債 發行이라고 하는 것은 基金의 目的에 違背되기 때문에 第8條, 第9條는 全文 削除하는 것을 原則으로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第2條에서 「지방채 발행에 조성된 자금」 우리가 이 基金을 造成하기 위해서 地方債發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資金을 造成하기 위해서 一時借入 해서도 안 됩니다, 빚을 짊어지는 基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基金의 財源에 第2條에서 6號, 7號 이것 削除하고, 本文에 第8條 地方債 發行과 第9條 一時借入 이것은 우리가 基金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은 하지 말고, 우리 基金은 알찬 剩餘金으로 인해서 基金을 만들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第8條, 第9條 削除를 提案합니다.

또 第10條 가서 投融資基金運營審議會를 設置를 한다고 하는데 우선 하나 묻겠습니다. 이 審議會가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審議會가 議決機構입니까, 諮問機關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우선 좀 먼저 答辯해 주세요.

이 審議會가 議決能力에 의해서 拘束力이 있느냐, 그냥 이렇게 이렇게 쓰자 해서 諮問만 받는 그런 審議會냐 이것을 우선 좀 答辯해 주시죠. 그러면 그 問題에 따른 問題를 이야기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諮問役割밖에 못합니다.

○金炯奎 委員; 諮問을 하면 이 投融資基金은 設置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제가 아까 우리 中央政府의

韓國銀行, 中央銀行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 地方政府的 地方 韓國銀行과 같다고 하는 좋은 發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韓國銀行은 金融通貨委員會에서 전적으로 審議·議決機構로써 韓國의 모든 資金을 中央政府로써의 役割을 하고 需要·供給을 해 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室長을 委員長으로 해서는 너무 약하니까 副市長을 委員長으로 하면서 審議·議決로.....

○金炯奎 委員; 아니, 누가 審議委員長이 되느냐가 問題가 아니라 審議會가 반드시 審議·議決機構냐, 財政投融资에, 예를 들어서 財源 調達에 관한 事項 融資 對象業體의 選定規模, 償還方法, 融資條件, 基金運營 이런 중요한 問題인데 이 審議會를 이제까지 서울市廳에서 다른 審議會처럼 諮問機關的 性格을 가지고는 이렇게 많은 돈을 거기다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韓國銀行의 金融通貨委員會처럼 審議·議決機構가 되어야만 그 議決事項에 의해서 이러한 중요한 事項을 執行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諮問機關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問題가 많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지금 法的으로 이러한 基金에 관한, 地方自活團體가 적용할 수 있는 類似法律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만들면서 지금 規則을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지만 條例 審議過程에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나올 것으로 알고, 지금 아주 여러 가지 參考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상으로 앞으로 審議委員會를 運營하는 過程에서 어느 돈을 어떻게 받아서 어떤 目的으로 어떻게 쓸 것이다, 利子는 어떻게 할 것이다, 기타 附隨的인 事項을 전부 일단 論議하는데 各部署 또는 第3者에 의해 서로 見解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일단 意見調整을 해 놓고 最終的으로 市長이 決定한다 하

는 생각을 가지고 審議· 議決, 審議機構로써 했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結果적으로 어떤 獨斷이 나올 수 있는 可能性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차라리 多數에 의해서 審議하고 議決을 해 버려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金委員님의 그런 忠言 같으신데 그것도 제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받아들이긴 하겠습니다만.....

○金炯奎 委員; 그래서 本委員 생각은 第10條에 「기금의 합리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合理的 運營에 관한 事項을 審議· 議決하기 위하여 그 議決을 插入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이것이 저희가 그냥 생각해서 넣은 것은 아니고 조금 參考로 한 法令이 있습니다. 政府에 財政投融資特別會計法施行令이 있는데 거기에 第7條에 融資金 등의 金利와 期間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만 이것은 投融資特別會計이기 때문에 融資 등의 金利와 期間이 상당히 중요한 機能을 갖는다고 보는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 會計의 融資金, 預託金 또는 豫受金の 金利와 融資 預託 또는 豫受期間은 法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財政資金運營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財務部長官이 이를 정한다」 이렇게 우리가 援用할 수 있는 그런 節次上的 어떤 施行令 하나를 찾아보니까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結果적으로, 審議會를 構成해서 여기서 審議를 거치면 이 審議 거친 結果에 의해서 市長이 이를 정한다고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金炯奎 委員; 그러니까 "審議를 거쳐" 하는 것을 거쳐를 議決事項으로 보아서 그대로 實施를 하면 되는데 그것을 議決

로 보지 않고 諮問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歲入· 歲出豫算에 대한 돈주머니하고 財政投融資基金 돈주머니하고 따로 되어 있는데 市長이 따로 된 돈주머니를 가지고 앞서서 말하는 豫算에 反映되는 이런 事業도 다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本委員은 豫算을 牽制· 統制하는 立場에 議會가 있느냐 만큼 되도록이면 豫算案의 성실한 執行 運營을 필요로 하는데 여기서 基金의 用途가 豫算에 反映되어야 될 그런 事業까지도 基金의 用途로 해서 活用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막고 이것이 合理的으로 정말 財政投融資에 必要性이 있는 그런 問題를 해야 될 것 아니냐.....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金委員 이 問題는 이렇습니다. 저는 金委員님 말씀에 同感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法 體系上 規則으로다 이것을 獨立된 機構로써 認定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問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規則을 정하는 過程에서 深度 있게 한 번 같이 論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法 體系上에 問題가 있기 때문에, 審議委員會를 만들었다고 해서 거기서 무조건 議決된 것은 그것은 바로 그거다 하고 連結시킬 수 있는 그런 體系가 되겠는지 저희가 조금은.....

○金炯奎 委員; 저는 그런 體系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서울市民의 돈을 運營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審議會에서 用途는 이렇게 이렇게 쓰자 해서 議決한다면 그 議決을 거쳐서 市長이 그대로 執行을 해서 그것이 나중에 地方財政法 第110條3項에 의해서 歲入· 歲出豫算과 基金決算報告書, 基金運營計劃書를 提出해서 議會의 監査를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이것은 저희가 유사한 것이 있습니

다. 예를 들면 이 公共料金審議委員會라든지 都市計劃委員會라든지 이것은 審議·議決機關이거든요. 거기서 審議·議決을 합니다, 지금 金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自體的으로 정한 規則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母法에 根據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저는 그 審議·議決하는 그 自體에 대해서 아무런 異議가 없어요. 좋습니다.

○金炯奎 委員; 異議가 없으면 그렇게 한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그래서.....

○金炯奎 委員; 그러면 議決機構라고 하는 뜻으로 解釋해도 되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議決機構가 되어야 돼요. 議決機構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規則으로도 單獨 議決機構로써 그냥 規定을 해버려도 괜찮겠는지 거기에 약간 제가 지금 疑心이 가는 것이 있어서.....

○金炯奎 委員; 오히려 條例에서 義務法規를 規定하니까 條例에서 당연히 議決機構라고 하는 問題를 規律하는 것이 規則에서 정하는 것 보다는 妥當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렇게 하지요.

○金炯奎 委員; 그러면 관한 事項을 審議·議決하게 위하여 이렇게 插入해도 關係 없겠습니까? 基金의 財源調達, 基金의 融資 對象業體 選定, 規模 이런 市民의 生活과 직접 連繫되어 있는 이 事項을.....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지금 제가 課長들하고 相議를 해 보았는데 역시 그 體系上的 問題가 있네요. 왜냐하면 法定委員會, 母法이 決定한 것 아니고 그냥 單純 條例로써 決定된, 上

位法이 없는 것은 議決機關이 決定하기가 어렵다 그런 見解인데.....

○金炯奎 委員; 그것이 무슨 常識입니까? 제가 얘기하는 地方 財政法 第110條에 이것을 設置할 수 있는 根據가 있습니다. 또 「기금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이 條例로 정하는 그 범위 내에 반드시 포함된다고 解釋이 되어야 되겠고 또한 第4項에 가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영 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느니만큼 條例로써 정하는 範圍에 속한다고 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結果적으로 지금 第110條에 나와 있는 것은 地方自治團體의 長에 의해서 運營되고, 그 다음에 對 議會 關係에 있어서는 매 會計年度마다 歲入·歲出豫算案 또는 決算書와 함께 提出하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金炯奎 委員; 그렇지요. 그러니까 長이 地方自治法에 의해서 基金을 運營하니까 市長이 中樞的인 責任을 運營하기로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案도. 그러니 그 案에 審議委員會라고 하는 機關을 議決機關으로 해서 條例의 目的을 충분히 達成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렇게 되면 結果적으로 볼 때 市長이 이 委員會 委員長이 되는 것이니까 결국 市長이 하는 것이나 같은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委員會라는 別途의 機能이 필요가 없어지지요. 지금 저희 都市計劃委員會나 公共料金審議委員會는 副市長이 委員長인데 이것은 都市計劃委員會에서

拒否하면 市長이 거기다 대고 이려고저려고 할 수가 없습니다.

○金炯奎 委員; 예를 들어서 韓國銀行所管을 財務部長官이 左之右之하고 있습니다. 韓國銀行에는 金融通貨委員會가 있습니다. 金融通貨委員會의 審議·議決을 반드시 거쳐야 財務部長官이 거기에 대한 화폐의 發行이나 화폐의 回收랄지 모든 財政投融資에 대한, 産業銀行에 대한 資金 配定이랄지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財政投融資基金을 서울市長이, 이것은 團體長이라고 하는 立場에서 서울市長이 運營 管理를 하는 것이지 實質的으로는 審議委員長 審議·議決한 內容에 따라서 市長은 執行하면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러니까 저는 지금 金委員님 말씀하시는 것에 다른 異議가 있는 것이 아니고, 審議·議決해도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金融通貨委員會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法的으로 法 事項이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다 치더라도.....

○金炯奎 委員; 아니 그 法을 정한 것이고, 條例는 法이 아닙니까, 지금?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아니 條例도 法인데, 條例 自體가 法이.....

○金炯奎 委員; 아니 우리 서울市民의 돈을, 딴 주머니 하나를 더 만들어서 우리 市民이 쓰겠다고 하는 그 目的에 쓰기 위해서 金融通貨委員會와 같은 審議委員會를 두자고 하는데 어떻게 거기는 法에서 이야기하고 여기 條例하고 性質을 좀 달리하는 것 같은데.....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러니까 그 委員會를 運營하는 그 뒷받침이 되는 法規가 條例로써.....

○金炯奎 委員; 정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條例로써 정하는데 그 內容 중에 보면, 法 事項에 地方財政法에 보면 基金의 設置해 놓고 나서 結果的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對 議會에 窓口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地方自治團體 長이 對 議會 窓口되지 않고, 그러면 여기 審査委員會 委員長이 對 議會 窓口가 되어야 됩니다.

○金炯奎 委員; 그러면 金融通貨委員會長이 韓國銀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金融通貨委員會 委員長이 되는 것이지요.

○金炯奎 委員; 韓國銀行이 지금 하고 있어요, 韓國銀行 總裁…….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아니, 韓國銀行 內에 設置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金炯奎 委員; 그렇지요. 그래서 韓國銀行長이 한다고…….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金融通貨委員會는 韓國銀行 內에 設置만 되어 있다 뿐이지 그것은 獨立機關입니다.

○金炯奎 委員; 獨立機關이니까 우리의 財政投融資基金은 審議委員會에서 權限을 주고 資金의 運營을 해야 되지 市長이 여러 가지 事項이 많이 있고, 命令事項이 많고, 해야 될 事項이 많은데, 지금 歲入豫算 돈 주머니 하나 있고, 그외의 事業이 財政投融資基金에 의해서 活用하는 것을 목과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둘 수는 없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러니까 制度的 裝置를 갖다가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린 대로 同感을 하는데, 地方財政法 第110條를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地方財政法 第110條에 地方自治團體長이 사실은 이것은 이런 基金運營委員會의 委員長으로 바뀌어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金炯奎 委員; 아닙니다. 第110條第1項에 「地方自治法 第13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하는 基金은 條例로 정하는 특별한 目的을 위하여 適正하고 效率的으로 運營하여야 한다」 그 適正하고 效率的으로 運營하기 위해서 審議委員會를 審議·議決機關으로 하고자 하는 거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사실은 자꾸 金委員님 좋은 意見주시는데 우리가 딴 뜻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法條文을 자꾸 參考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게 각 過程이 다 필요로 하다고 그러면 地方財政法 第110條가 第133條를 引用을 하면서 거기에 條例로 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運營에 관한 事項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審議·議決하는 機構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야 이 法 論理가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金炯奎 委員; 아니 우리가 第4條 基金의 運用·管理에서 「기금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러니까 市長이 運營管理하는 것이 原則인데 아까 걱정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보다 더.....

○金炯奎 委員; 걱정이 아니라.....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폭넓게 제대로 運營管理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나마 좀더 잘 해 보기 위해서 審議委員會를 두겠다고 여기다가 넣었던 것인데.....

○委員長 朴尙東; 企劃管理室長님, 한 10分間 停會를 하고 個別的으로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10分間 停會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17時 35分 會議中止)

(17時 54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尙東; 續開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3. 1991年度行政事務監查結果報告書採擇의件

○委員長 朴尙東; 먼저 議事日程 第3項에 서울特別市議會 行政事務監查 結果報告書에 대한 內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內容書 油印物을 통해서 檢討해 보셨지요?

(「네」 하는 委員 있음)

이 行政事務監查結果 報告書에 異議가 없습니까?

(「네」 하는 委員 있음)

그럼 가결된 것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1991年度行政事務監查結果報告書

(뒤에 실음)

.....

○委員長 朴尙東; 그 다음 서울特別市財政投融資基金設置條例 案 原案 中에 第2條7號 日時 借入金은 削除를 합니다.

그 다음에 第7條1項 "自治區는 自治區의 基本財政需要에 充當하고 여유가 있는 財源의 一部를 自治區 議會의 議決을 얻어 基金에 預託 또는 積立할 수 있다." 이렇게 變更하도록 되겠고 그 다음 3項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積立된 財源은 自治區의 營繕事業에 所要되는 費用 充當을 위하여 所要額의 一定率을 매년 積立하여야 한다"를 削除한다. 그 다음에 第3

項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예약되거나 積立된 財源은 自治區의 營繕事業 費用으로만 이를 融資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하는 委員 있음)

그리고, 그 다음에 第8條1項 "市場은 基金의 財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 基金의 負擔으로 地方債를 發行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第2項 「방법 및 절차와 그 상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를 削除를 하고, 新設은 "地方債 發行으로 造成된 資金은 議會의 議決을 얻은 事業에 한하여 使用한다" 또 第9條 一時借入金 「시장은 기금의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기타 용자기관으로부터 용자를 일시차입 할 수 있다」 를 削除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第2項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 년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도 削除합니다.

그 다음 第10條 財政投融資基金運營審議會의 設置 해서 第1項 「기금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재정투융자기금 운영심의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第2項 「심의회는 심의 및 심의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조치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第3項은 「기금의 용자대상 사업의 선정 및 규모 결정에 관한 사항」 이것 맞잖아요?

○金炯奎 委員; 아니지요. 1項 1號, 2號, 3號, 4號가 있고.....

○李秉守 委員; 1項에 1號, 2號, 3號. 4號가 있고.....

○委員長 朴尙東; 1項에 참 1號, 2號, 3號. 그래요 3號, 2號가 아까 바뀌었습니다, 1項이 아니고. 3號 "審議會는 審議 및 議決事項에 대하여 會議錄을 作成 備置하여야 한다" 이것 1

項 3號 아십니까?

○金炯奎 委員; 1項 審議를 하기로 하고 그러면 1項은 끝이지요. 2項에 가서 "審議會 構成 運營 등의 事項은" 3項으로 하고, 2項에다 "審議會는 會議錄을 作成 備置하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委員長 朴尙東; 2項에 "審議會의 構成· 運營 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規則으로 정한다" 이것은 그냥 두고.....

○金炯奎 委員; 그것을 3項으로 하고.....

○委員長 朴尙東; 3項으로 하고 그 다음에 "審議會는 審議 및 議決事項에 대하여 會議錄을 作成 備置하여야 한다" 이것을 2項으로 하자?

○金炯奎 委員; 그래야 條文 整理가 되지요.

○委員長 朴尙東; 그 다음에 第3條 "水害復舊融資 등을" 削除하고 "地域經濟 活性化 등을" 插入, 低所得層에 대한 傳貰金 融資 및 地域經濟 活性化 등 市民의 福祉增進을 위하여 市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特殊事業에 所要되는 費用의 融資"이렇게 原案을 訂正을 했습니다.

이것을 崔明鎭 委員과 金炯奎 委員께서 이 內容을 原案에서 變更한 內容을 動議해 주었습니다. 再請 있습니까?

(「네」 하는 委員 있음)

三請 있습니까?

(「네」 하는 委員 있음)

異議 없으시죠?

(「네」 하는 委員 있음)

感謝합니다.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안)

(뒤에 실음)

.....
○委員長 朴尙東; 散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8時 03分 散會)

○出席委員

朴尙東 李聲九 蘇中天 全潤杻

孟今龍 柳準向 車在國 李秉守

李敏國 兪相根 崔明鎭 金炯奎

○專門委員

安錫洙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市政研究官 康泓彬

投資管理官 金益洙

企劃擔當官 金光市

豫算擔當官 金禹奭

市政開發擔當官 李哲秀

法務擔當官 陳翼喆